

제6호

국·내·입·법·의·견·조·사

선물거래법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1993. 3.

한국법제연구원

『국내입법의견조사』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법의견과 향후 예측가능한 입법수요를 조사·분석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법생활과 국가의 입법정책 및 입법과정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을 위한 법의 역할과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정기간행물입니다.

일반국민 및 이해당사자의 입법의견을 빠짐없이 수집·검토하는 것은 본 조사연구의 목적과도 직결됩니다. 보다 완전한 입법의견조사연구를 위해서는 일반국민 및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 조사와 관련하여 의견과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희 연구원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110-062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번호 (02) 722-0163~5

연구책임자

수석연구원 이 준 우

선임연구원 최 성 근

연구원 배 승 희

목 차

제 1 편 선물거래법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I. 문제의 제기	1
1. 선물거래제도 도입의 필요성	1
2. 선물거래법 제정과 관련한 입법상의 쟁점사항	2
II. 각계의 의견	4
1. 쟁점사항별 각계의 의견	4
1) 선물거래소의 설립형태	4
2) 규제기관	13
3) 입법방식	21
4) 규제형태	24
2. 각계 의견의 정리 및 평가	28
1) 거래소의 설립형태·규제기관 및 입법방식	28
2) 규제형태	29
III. 현행법, 관련입법안 및 외국의 입법례	31
1. 현행법	31
2. 관련입법안	40
3. 외국의 입법례	46
1) 미 국	47
2) 영 국	49
3) 일 본	50
VI. 입법방향에 대한 제언	52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I. 최근입법의견 동향	61
1. 최근입법의견 목록	62
2. 최근입법의견 요지	66
II. 최신법령 목록	106

제 1 편

선물거래법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I. 문제의 제기

1. 선물거래제도 도입의 필요성

선물거래(futures trading)란 특정상품의 특정수량에 대하여 현재 거래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장래 특정일에 매수 또는 매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본주의경제체제하에서 상품의 가격은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에 의하여 당해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고, 이와 같이 정해진 가격은 분배의 기준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은 장래 상품의 가격에까지는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장래 상품의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은 여전히 남게 되며, 이는 곧 중·장기적인 경제활동을 계획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가격변동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하여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장래의 매매가격을 현재의 시점에서 확정하는 선물거래제도인 것이다.

이처럼 장래의 매매가격을 미리 확정시킴으로써 가격이 상승하든지 하락하든지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한 수입 또는 지출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물거래는 현재 세계적으로 현물시장의 매출액을 상회할 정도로 크게 확대되어 있으며, 선진각국에서는 선물거래를 보유자산의 가격변동 위험회피 및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적정분배를 비롯한 부동산·증권에 이은 새로운 투자수단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선물시장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며, 단지 1974년 이래로 제한적으로 해외선물거래소의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출위주의 경제정책이 불가피하고 국내시장개방에의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며 농·축산물, 광산물, 공산품 뿐만 아니라 외환·금리·주식 등의 큰

폭의 가격등락으로 만성적 경제불안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실질상품과 금융상품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선물거래 제도의 도입이 절실히 요망된다.¹⁾

2. 선물거래법 제정과 관련한 입법상의 쟁점사항

선물거래제도의 도입은 선물거래법의 제정으로 구체화되는데, 선물거래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 주요한 입법상의 쟁점을 둘러싸고 현재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첫째, 선물거래소의 설립형태를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을 모두 취급하는 통합형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을 분리하는 형태로 할 것인가, 또 분리형의 경우에 있어서도 금융선물을 주가지수선물과 여타의 금융선물을 함께 취급하는 형태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다시 분리하는 형태로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둘째, 선물거래의 규제에 있어서,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의 거래방식의 유사성 내지 연계성을 감안하여 일원적으로 단일의 규제기관에서 관할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현선일치의 원칙에 따라 현물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선물도 관할하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셋째, 선물거래법을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을 모두 포함하는 단일법으로

1) 선물거래제도의 도입필요성 및 경제적 타당성에 관해서는 경제기획원, 재무부, 조달청, 증권거래소,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기타 경제연구소, 관련학회 등에서 '80년대초부터 연구를 진행하여 현재 검토를 마친 상태이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자본주의국가들은 물론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을 비롯하여 인도네시아, 대만 기타 동구제국들까지도 이미 국내선물거래소를 개설하였거나 선물거래제도의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도입시기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할 것이다.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을 분리하여 각각에 대한 개별법으로 제정할 것인가, 또 개별법의 경우에 있어서도 금융선물을 주가지수선물과 여타의 금융선물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다시 분리하여 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네째는 선물거래의 규제형태를 공적 규제 즉, 타율적 규제 위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거래소, 협회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에 보다 큰 비중을 둘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조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관하여 쟁점사항별로 대립되는 의견의 내용을 알아본 후 이를 정리·평가함과 아울러 현행법·관련입법안 및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입법방향에 대한 약간의 제언을 하고자 한다.

한편 도입순위문제는 순수한 경제정책적 판단의 문제이므로 이 조사보고서의 논의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현재까지 제기된 도입순위에 관한 의견은 자료로서 정리하여 이 조사보고서의 후미에서 참고자료로 간략히 소개한다.

II. 각계의 의견

1. 쟁점사항별 각계의 의견

1) 선물거래소의 설립형태

선물거래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먼저 거래소의 설립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논의되고 있는 설립형태에는 첫째,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을 모두 취급하는 선물거래소를 개설하여야 한다는 통합형과 둘째, 상품선물을 취급하는 거래소와 금융선물을 취급하는 거래소를 분리하여 개설하여야 한다는 분리형 및 셋째, 분리형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주가지수선물을 취급하는 거래소와 여타의 금융선물을 취급하는 거래소를 다시 분리하여야 한다는 세분형이 있다. 이 조사보고서에서는 세분형을 분리형에 포함시키고 있다.

(1) 통합형

① 정부관계기관

○ 조달청

선물거래소를 설립할 경우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을 통합운영하여야 한다.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은 운영기법이 동일하기 때문에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미국형의 통합형을 하여야 한다. 선물거래에 있어서 통화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도 하나의 상품이며 선물과 현물은 완전히 별개의 시장을 형성하므로 도입초기부터 상품관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또 선물거래 자체가 상품과 금융부문에서 동시에 이루어지므로 분리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 초래된다. 예를 들어, 달러화로 알루미늄을 구입할 경우 알루미늄 뿐만 아니라 달러화에 대해서도 헤지(위험회피)를 해놓아야 환차손을 피할 수 있으며, 투

자자들이 증거금을 별도로 예치하는데도 불편이 따른다. 더우기 상품과 금융을 분리할 경우 거래자금이 분산되어 국내선물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한경, 1992. 7. 18).

② 학 계

○ 윤 영섭(고려대 경영학 교수)

추후 국내선물시장의 발달과 국제환경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통합안이 더 타당하다. 분리안이 간과하고 있는 점은 선물거래와 선도거래의 구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선도거래는 거래당사자가 직접 거래조건 등을 정하는 비공식적인 점두거래이므로 기초자산의 차이가 중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분리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선물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지 않고 거래소내의 청산소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증권시장에서처럼 거래상대방이나 거래대상상품 보다는 거래가격이 주요관심사가 되는 유동성높은 금융수단이다. 또한 선물시장을 금융선물시장과 상품선물시장으로 분리하자는 논리는 주식시장을 금융업주식시장과 제조업주식시장으로 나누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 금융과 상품선물 통합운영의 당위성 근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가령 국내사료업자가 해외에서 곡물을 수입하고 달러결제할 경우 상품과 금융의 통합이 필가피하듯 상품과 금융선물의 이용자가 크게 양분되어 있지 않다.

나. 성공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금융선물거래와 성공가능성이 낮은 상품선물거래를 병행실시함으로써 운영의 묘를 살리고 비용절감을 통한 선물시장의 조기정착을 도모할 수 있다.

다. 두개의 거래소 설립은 비용의 이중부담 및 중복투자의 낭비를 가져오므로 통합을 통해 중복성 방지와 효율성 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라. 선물거래소를 통합할 경우 선물중개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돼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마. 상품과 금융선물을 함께 거래함으로써 투자자가 분산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바. 금융시장의 국제화·대형화 추세에 맞추어 선물시장의 대형화가 바람직하다.

분리주의를 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는 상품선물이 단일종목원칙하에 오랜 전통을 이어 왔고, 금융선물도입시 이미 16개의 상품거래소가 운영되고 있어서 금융선물을 어느 하나의 상품거래소에 상장하기 어려웠다. 요컨대 상품선물의 독자적인 운영은 비용 등에서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금융과 상

품의 통합적인 선물거래가 오늘날 세계적인 추세이다(선물경제, 1991.9(제 61호), 13면; 1992.7.28 한국선물학회·매경주최 선물거래제 도입 정책토론회, 선물경제, 1992.8(제72호), 38~41면; 매경, 1992.7.29).

○ 박 현영(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교수)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선물시장의 연계성에 있다. 즉, 주가지수선물의 거래자가 따로 있고 외환, 농산물선물의 거래자가 따로 독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에서 농산물선물은 농부나 농산물 유통업자들만이 거래하고 금속선물은 생산업자나 제조업자들만이 거래하는 등 각각의 선물이 대상물을 보유내지는 사용하는 사람들만이 거래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대상물이 무엇이든지 선물은 선물로서 하나의 파생적인 증권이다. 물론 대상물에 따라서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현물가격의 변화에 따른 위험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헤징의 수요때문에 대상품을 소유, 보관, 사용하는 자가 그 대상품에 대한 선물거래를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헤징거래의 상대역이 되는 선물매수자들은 현물과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일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각종 선물이 거래되고 있는 미국시장의 경우 각각 선물시장 참여자들이 독립되어 있지 않고 연계되어 있음을 주시할 필요성이 있겠다.

또한 대상품에 따라 가격결정방법이 다른 것으로 잘못 이해 될 수 있다. 문헌에 소개되고 있는 가격결정모형을 보면 대상물에 따라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도출된 개념이나 과정은 동일한 것이다. 선물계약은 어디까지나 파생적인 것이기 때문에 현물가격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는 것으로 대상품목이 무엇이든지 동일하다(선물경제, 1992.7(제71호), 17면; 한경, 1992.6.21).

○ 최 진욱(시카고 드폴대학교 경제학 교수)

선물은 표준화된 상계약이며 매매체결방식이나 청산절차, 참여예상중개업소 등의 특성이 상품선물을 거래하거나 금융선물을 거래하거나 큰 차이가 없으므로, 독립된 두개의 상품선물과 금융선물거래소를 설립함으로써 설립비를 이중으로 부담하거나 중복투자를 유발시킬 필요가 없다.

또한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을 함께 거래함으로써 현대 포트폴리오이론에서 강조하는 분산투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선물중개업체의 비용부담을 축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을 상승시킬 수 있다. 또 만약 분리형으로 하는 경우 국내에 선물거래가 활성화되어 선물기금(Futures Fund) 운영이 허락된다고 할 때 운영자의 자격조건, 선물기금 참여대상자 선정조건, 거래대상품목 제한 등을 어떻게 결정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이와 함께 국내에서 상품선물거래소가 독자적으로 생성,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문제된다.

급성장해가는 금융선물거래의 추세에 힘입어 상품선물을 병행거래하고 동일한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통합규제하게 하면 더욱 효율적이리라 믿는다(선물경제, 1992.8(제72호), 15~18면).

③ 업 계

○ 이 현열(선물거래협의회 사무국장)

선물시장은 현재 농산물의 엄청난 가격변동과 금융상품거래의 위협을 고려할 때 상품과 금융을 함께 취급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주무관청간의 알력을 막기 위해 미국처럼 대통령직속으로 선물시장을 관할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중경, 1990.4.28).

○ 현 재현(동약그룹회장·선물협의회장)

관련법규의 제정이 시급한데 현재까지 학계와 업계의 의견은 다소 절차상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단일법하의 단일규제기관 및 종합거래소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의 선물거래는 관계부처간의 이해를 넘어 종합적으로 운영·관리되어 꽃을 활짝 피우고 있다. 관료주의적인 관념이 강한 일본의 선물시장은 관계부처별로 사분오열된 상태로 운영·관리되고 있어 오랜 역사성이나 국제경쟁력에 비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한경, 1991.9.5).

○ 성 영화(일간무역 기자)

수년동안 끌어온 경제기획원, 재무부, 조달청 등 부처간의 소관싸움이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상품선물만을 거래하기 위해 선물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것은 국력낭비란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특히 업계입장에선 눈앞에 다가선 자본 및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엄청난 파고와 높은 무역의존도 및 70%이상의 원자재 수입의존이란 현실에서 노정되는 엄청난 환리스크를 헤징할 수 있는 수단이 더욱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완급문제이자 국가적 경쟁력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일본의 금융선물과 상품선물의 2원화 방식보다는 통합된 미국식 선물거래소 운영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선물경제, 1991.9(제61호), 15면).

○ 이 승찬(동양경제연구소)

현대에 와서 거래소를 설립·운영하는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고, 거래소 운영의 핵심이 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개발에 드는 비용이 상당하며 이에 따르는 위험 또한 크다. 어느 누군가 이러한 투자비용과 위험을 궁극적으로 부담하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때, 거래소의 최종고객인 투자자가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거래소로부터 부담을 떠안게 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 고유현물의 시장규모가 작은 현실아래서는 '독점적 분리' 형태로 거래소가 설립될 때에는 각 거래소에서 상장시킬 수 있는 품목의 숫자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비효율적인 거래소 운용을 초래하게 되어 거래소의 서비스인 유동성제공에 대한 보상의 정도를 거래소가 너무 높게 요구하게 되고 따라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어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거래소 설립의 자유가 보장된 복수거래소제도를 전제로 하면서 각 거래소가 상장시키는 품목에 대한 제한이 없어야 한다. 다만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거래소가 난립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이룰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통합' 거래소를 설립·운영하고 추후 국내 현물시장의 발전에 따라 추가거래소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선물경제, 1992. 7(제71호), 15면).

○ 여 훈필(제일선물주식회사)

미국의 경우 곡물시장을 중심으로 선물시장이 형성되다가 금융상품시장을 확대한 것을 보면 물론 역사적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장이 확대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는 하나, 한편으로는 곡물상품 거래를 통한 KNOW-HOW를 계속 축적시켜 금융상품까지 확대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 초기 시장의 시행착오를 거쳐 완벽에 가까운 선물시장을 전 품목에 대하여 형성하였고 그 체제 및 관리도 한 곳에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는 선물시장 거래방식이 일반상품과 금융상품에 대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논리에 기반을 둔 것이다.

따라서 초기단계에는 시장규모가 적어 통합운영의 묘를 살려 비용도 절감하고 또한 초기의 문제점을 해결한 후 시장 규모를 점차 확대시켜 나아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규모가 커져서 분리운영이 필요하면 그때가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선물경제, 1992. 7(제71호), 18~19면).

○ 정 병대(우신선물 대표이사)

하나의 선물거래소를 설립하여 운영하는데는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다. 이

것을 무시하고 현물의 차이나 그에 따른 관할의 분리를 내세워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이 분리된 거래소를 설립해서 운영하는 것은 자연히 사회적으로 커다란 Dead Weight Loss의 위험을 수반한다. 이에 비해서 하나의 선물거래소로 통합함으로써 어느 한 쪽이 일시적으로 다른 쪽을 지원(subsidy)하거나 시장조성의 실패로 다른 쪽이 사멸하는 코스트는 상대적으로 극히 적을 것이다. 오히려 외국의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하나의 선물거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상품이 개발되고 사멸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우리의 선물거래소도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도입될 선물거래소는 당분간 우리에게 맞는 선물상품이 정착될 때까지 실험, 개발의 장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이러한 개발투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분리보다는 오히려 통합된 형태가 투자리스크를 줄이는 간편한 해결방안이 될 것이다(선물경제 1992.9(제73호), 17면).

(2) 분리형

① 정부관계기관

○ 재무부

선물거래소를 설립할 경우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을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금융부문의 특수성과 경제전반에 미치는 파급영향 등을 감안하여 일본형의 분리운영을 하여야 한다.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금융부문은 선물시장의 동향이 곧바로 현물시장에 영향을 미쳐 시장을 떴어서 생각할 수 없다. 특히 상품선물시장의 혼란은 피해자가 관련된 극소수에 국한되지만, 금융선물의 경우에는 국가경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하에 상품시장과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또 금융시장개방 등 금융자유화와의 연계를 위해서도 상품과 분리시킬 필요성이 있다(한경, 1992.7.18).

○ 증권거래소

주가지수선물거래는 따로이 선물거래소를 개설함이 없이 기존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증권거래소는 선물거래제도와 유사한 청산거래의 운영경험('71년 이전)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84년 이후 선물거래제도에 대한 조사·연구와 전문인력의 양성으로 상당한 노우하우를 갖고 있어 제도도입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나. 또한 '87년 증권거래법 개정에 의하여 선물거래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매매, 결제제도, 관계규정 및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의 입안과 Simulation 실시 등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도입준비업무를 진행하여 왔다.

다. 더욱이 증권거래소는 회원, 건물, 전산시스템, 정보전달체제, 전문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어 주가지수선물거래의 도입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주가지수선물거래 상황에 따라 시장시설 및 인력을 주식시장과 연계하여 신속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으므로 도입초기에 거래가 부진하여도 이를 극복하여 선물거래제도를 국내에 효율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어 국익에 가장 기여할 수 있다(증권거래소 주가지수선물거래도입 추진담당자 인터뷰, 1993.1).

② 학 계

○ 권 영준(한림대 교수)

최근 위험헤지수단으로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대상으로는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이 있는데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향후 십수년간은 효율적인 선물시장이 성립될 수 있을 만큼 현물시장이 발전된 곳은 금융시장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상품의 경우 가격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시장을 이용해야 할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아직 비효율적인 국내상품선물거래소를 설립할 필요는 없으며 얼마든지 해외상품선물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1992.7.28 한국선물학회·매경주최 선물거래제도입 정책토론회 발표내용, 선물경제, 1992.8(제72호), 42면; 매경, 1992.7.29).

○ 박 상용 교수

거래소가 통합될 경우 거래가 활발한 금융선물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품선물을 지배하게 되어 거래소의 효율성을 저하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제성의 관점에서 거래소통합이 바람직한 대안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선물거래소 및 관할의 통합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 없다. 단지 일본만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등의 예에서 보듯이 선물거래제도는 각국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는 것이지 특정국가의 거래제도가 최선의 대안이거나 세계적 추세일 수는 없다(1992.7.28 한국선물학회·매경주최 선물거래제도입 정책토론회 토론내용, 선물경제, 1992.8(제72호), 47면; 매경, 1992.7.29).

(3) 기타 의견

○ 이 선(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금융선물거래는 미국에서 최초로 시작되었고 또한 발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미국보다는 늦게 출발한 영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선물거래제도도 미국의 경우보다는 덜 복잡하다.

이렇게 볼 때 선물시장의 설립을 위한 여러가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서 무조건 처음부터 미국제도만을 그대로 모방하여 선물거래소를 설립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우리의 경제여건과 산업구조를 감안하여 절충적인 제도를 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설립초기에는 비교적 간단한 영국이나 일본 등의 거래제도를 중심으로 선물거래소를 운영하다가 점차적으로 거래량이나 시장규모가 커짐에 따라 미국의 거래제도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1987.4.2 증권거래소주최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의 도입방안에 관한 세미나 발표내용, 주식, 1987.4(제224호), 37면).

○ 조 대우(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국내선물거래소의 도입형태는 처음에는 일본형으로 시작하고 여건이 성숙될 경우 미국형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갖고 출발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 현재 이자율 및 외환선물을 포함한 금융선물의 국내도입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므로 금융선물거래소와 상품선물거래소로 분리운영하는 미국형으로 출발하긴 어렵다. 또한 증권거래소나 조달청 역시 전자는 주가지수선물의 상장권 확보에 후자는 해외선물거래소의 이용단계를 넘어 상품선물거래소의 국내설립이 현안의 최대과제인 동시에 양자 모두 하나씩의 기득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출발을 별개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는 1990년 2월의 제12차 선물거래심의위원회에서의 금융선물에 대한 묵시적인 조달청의 동의와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발전모형이 되고 있는 일본형과 동일하며, 게다가 최근 확정된 제7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1992-1996)에서 주가지수선물을 증권업에서 할 수 있게 업무영역을 확장시켜 놓고 있으며 외환관리법개정안(재무부)에도 금융선물거래소의 설립에 대비하여 금융선물거래를 별도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일본형으로 그대로 답습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나올 수 있는데, 이는 일본의 선택과 우리의 선택의 역사적 배경이 다를 뿐 아니라 최근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타당성 논쟁으로 설명이 되리라고 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선물거래소설립의 중요한 이유가 시장개방에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는 24시간 거래형으로 지향하는데 일본의 경험을 타산지석으로서는 못삼을 망정 같은 시행착오를 할 수 없다고 본

다. 즉, 중국적으로는 하나의 거래소에서 모든 상품(금융포함)의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종합선물거래소(가칭)의 설립형태를 제안하고자 한다(선물경제, 1991.9(제61호), 10면).

2) 규제기관

선물거래의 규제기관에 관하여는 첫째,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의 거래방식의 유사성 내지 연계성을 감안하여 일원적으로 단일의 규제기관에서 관할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현선일치의 원칙에 따라 현물을 관할하는 기관에서 현물규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물도 관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1) 일원적 규제기관

① 정부관계기관

○ 조달청

선물거래에 있어서 통화나 채권 등의 금융상품도 하나의 상품이며 선물과 현물은 완전히 별개의 시장을 형성하므로 도입초기부터 상품관리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따라서 감독기구는 상품과 금융을 망라하는 범부처적인 위원회에서 맡아야 한다. 또 선물중개사자격시험 역시 일원화하여야 한다(한경, 1992.7.18).

○ 강 치관(헌법재판소 과장)

상품선물거래는 조달청에서 맡고 선물환거래는 재무부에서 담당하는 현행 제도는 모순이 많다(매경, 1990.5.28).

○ 유 재욱(헌법재판소 차장)

대상품목만 다를 뿐 모든 거래과정이 같은데 별도의 관청에서 담당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매경, 1990.5.28).

② 학 계

○ 윤 영섭(고려대 경영학 교수)

선물시장은 그 구조적 특징이 현물시장과는 다르기 때문에 선물시장을 현물시장과 구분하여 규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이유를 몇가지 들면, 첫째로 선물거래는 인도날자가 고정되어 있다는

점, 둘째로 거래상품이 제한적이고 선물거래량이 실질생산량보다 훨씬 많은 점 그리고 셋째로 선물거래는 적은 자기자본을 가지고 큰 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 즉, 레버리지가 높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선물거래는 투기와 가격조작의 위험이 크고 규제의 내용도 그렇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선분리화의 원칙이 기본적 입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규제측면에서도 설립초기에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통합적 감독기구가 필요하다(선물경제 1991.9 제61호, 13면; 1992.7.28 한국선물학회·매경주최 선물거래제 도입 정책토론회 발표내용, 선물경제, 1992.8(제72호), 41면; 매경, 1992.7.29).

○ 최 진욱(시카고 드폴대학교 경제학 교수)

현물을 규제하는 부처에서 동종선물을 규제하는 것이 일핏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쉽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속성을 분명히 구분하여 현명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이다.

선물은 표준화된 상계약이며 매매체결 방식이나 청산절차, 참여예상 중개업소 등의 특성이 상품선물을 거래하거나 금융선물을 거래하거나 큰 차이가 없으므로 상기 선물시장을 규제함에 있어서 단일규제기관에서 동일한 감시·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상품선물이용자와 금융선물이용자를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시장참여자로 속단하여 통합규제가 타당치 않은 듯 거론하는 점은 거미줄 같이 얽혀 있는 현 국제 및 국내기업의 경제역할을 이해하지 못한 까닭이다. 급성장해가는 금융선물거래 추세에 힘입어 상품선물을 병행거래하고 동일규제기관으로 하여금 통합규제하게 하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 통합규제만이 규제·감독기관의 이중성 및 중복성을 방지하여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선물경제, 1992.8(제72호), 13~17면).

③ 업계 등

○ 현 재현(동약그룹회장·선물협의회회장)

관련법규의 제정이 시급한데 현재까지 학계와 업계의 의견은 다소 절차상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단일법하의 단일규제기관 및 종합거래소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국가들의 선물거래는 관계부처간의 이해를 넘어 종합적으로 운영·관리돼 꽃을 활짝 피우고 있다. 관료주의적인 관념이 강한 일본의 선물시장은 관계부처별로 사분오열된 상태로 운영·관리되고 있어 오랜 역사성이나 국제경쟁력에 비해 제대로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한경,

1991.9.5)

○ 이 현열(선물거래협의회 사무국장)

선물시장은 현재 농산물의 엄청난 가격변동과 금융상품거래의 위험을 고려할 때 상품과 금융을 함께 취급하는 방식으로 설립되어야 하며 주무관청간의 압력을 막기위해 미국처럼 대통령직속으로 선물시장을 관할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중경, 1990.4.28).

○ 이 승찬(동양경제연구소)

규제 및 감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정부의 규제 및 감독의 목적은 현물시장, 파생시장을 막론하고 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를 적절히 보호함과 동시에 업계가 새로운 거래기술과 상품 및 이용자그룹의 등장에 빨리 대응하여 순기능의 자본시장을 이룩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파생시장에 대하여 법적으로 단일한 상부구조를 확립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것으로 그쳐야 한다. 즉, 거래소의 법적인 독점을 제한하고 내부자거래, 시장교란 및 자율규제 기관으로서의 거래소가 확립한 규칙의 이행 여부 등을 감시, 감독, 처벌할 수 있는 정부의 일개 부처에서 독립된 단일감독기관의 설치 및 운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선물경제, 1992.7(제71호), 15면).

○ 여 훈필(제일선물)

상품거래소가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것보다는 독립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각 부처의 협조를 얻을 수 있고 부처간에도 유기적 관계가 정립되어 거래소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선물경제, 1992.7 제71호, 19면).

○ 정 병대(우신선물 대표이사)

선물거래의 규제형태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선물의 본질과 기능의 수행에 부합하는 규제의 목적을 살펴봄으로써 추찰할 수 있다고 하겠다. 선물의 본질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현물시장의 효율성을 필수조건으로 전제하지는 않으며, 잘 기능하는 선물시장은 현물시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현물시장에 관한 정보를 산출하고 교환하는 메카니즘으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선물시장의 관할과 감독의 주요 목표와 역할은 효율적인 정보의 산출과 교환기능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의 투명도를 높이고 새로운 정보전달의 메카니즘으로 신상품의 개발, 정보의 전달을 저해하는 시장지배와 같은 불공정행위와 사기와 같은 불법행위를 감시하는 경찰의

역할로 대별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관리자로서 객관성의 요구나 경찰로서의 중립성, 그리고 전술한 관할의 획일화에서 오는 불공평 및 비효율성의 문제를 감안할 때 자연히 선물의 관할기관은 현물관할기관과는 독립적인 조직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선물경제, 1992.9(제73호), 19면).

○ 한 원선(대한증권업협회 전문위원)

거래대상상품의 다양화에 따라 관련기관의 이해대립이 우려되는 바, 미국의 CFTC와 같은 선물거래에 관한 독립규제기관의 설립도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선물경제, 1991.9(제61호), 19면).

○ 정 범대(우신선물 대표이사)

현물시장에 중점을 두어 상품, 금융선물로 구분하고 규제기관을 분리하자는 논리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상품 및 금융선물은 선물시장에서의 편의적 구분이기 때문에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에 기준을 두고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전제하고 출발하는 것은 무리이며 자가당착적인 모순이다.

관할권의 문제면에서 볼 때 선물시장의 본질은 기본적인 현물시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되고 선물시장의 기능(risk transfer)을 보존, 즉 위험을 이전시키는 기능을 통해 전체 사회적 비용이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해야 한다. 시장규제의 목적은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선물거래의 대상현물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선물시장의 규제이유가 반드시 효율적일 필요는 없다고 보며, 동시에 할 경우 효율성이 오히려 감소될 수도 있다.

국내에서 지금까지의 금융당국의 규제패턴은 보수적이고 투기억제원칙을 강조하는 규제패턴이므로 자유경쟁을 보장하는 선물시장의 거래방식이나 패턴과는 일단 철학적으로 다르다고 본다. 금융시장을 통제하는 부처가 현선 일치론적인 관점에서 동시규제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은 첫째, 헤징과 투기가 동시에 허용되는 보험회사, 금융기관 등이 현물로 투기를 하고 선물로 헤징하는 경우에는 시장기능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둘째, 동시선·현물참여로 내부자거래의 오해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1992.7.28 한국선물학회·매경주최 선물거래제 도입 정책토론회 토론내용, 선물경제, 1992.8(제72호), 46면; 매경, 1992.7.29).

○ 윤 호일 변호사

선물에 기인한 현물의 변동성 증가는 구체적인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현물감독기관의 선물시장규제를 통하여 시장변동성 등의 선물시장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감독기관의 현물중심 사고방식으로 선물시장의 위축과 관리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선물시장은 독립성이 보장된 전문기관에 의하여 일관적으로 효율성있게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이때 선물감독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은 감독기관을 대통령직속으로 하여 현물감독기관, 학계, 업계의 전문가로 구성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물시장으로 인한 현물시장 혼란의 가능성은 현물감독기관의 선물시장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선물감독기관과 현물감독기관의 원활한 정보교환과 상호협조를 통해서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1992.7.28 한국선물학회·매경주최 선물거래제 도입 정책토론회 토론내용, 선물경제, 1992.8(제72호), 47~48면; 매경, 1992.7.29).

(2) 현선일치에 의한 규제기관

① 정부관계기관

○ 재무부

상품선물시장의 혼란은 피해자가 관련된 극소수에 국한되지만 금융선물의 경우에는 국가경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관리하에 상품시장과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금융선물의 감독기관은 금융시장을 관리하는 기관이 맡아야 한다. 또 선물중개사자격시험은 금융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들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독립시켜야 한다(한경, 1992.7.18).

○ 증권거래소

주가지수선물거래의 규제는 현물거래의 규제기관이 담당하여야 한다. 주가지수선물과 주식거래의 시장관리체계가 재무부(증권국), 증권위(증권감독원) 및 증권거래소로 일원화되므로 증시정책의 수행, 시장관리수단과 방법의 선택, 중개업자규제 등에서 양 시장의 종합관리와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다. 또한 주가지수선물거래에서의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는 주로 주식거래와 연계되어 시도되므로 이의 조사·적출 및 제제가 용이하며, 가격급변 등 비상시에 증거금의 조정 및 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조치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증권거래소 주가지수선물거래도입 추진담당자 인터뷰, 1993.1).

② 학 계

○ 권 영준(한림대 사회과학대 교수)

미국과 같은 효율적인 금융시장에서는 감독체계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경직된 금융시장에서는 선물시장도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선진국의 경험보다 훨씬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금융선물거래를 위하여 현선일치의 감독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가. 금융선물의 현물시장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효과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Type II Error(즉, 만약 금융선물이 현물시장의 가격변동성을 증대시킴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감독을 이원화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현선일치에 의한 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는 또한 선물시장도입으로 인하여 참여자의 혜택은 있으나, 현물시장에 있을지도 모르는 악영향으로 인한 비참여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Pareto Improvement와도 맥을 같이 한다.

나. 현물시장 참여자의 행태(Agent's Behaviors)가 향후 선물시장의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우리나라 금융시장 참여자의 행태를 정확히 분석·파악하는 것이 성공적인 선물시장 도입에 관건이 되며, 특히 변태적 행위(Agency Problems 또는 Illegal Behavior)를 감독해 본 경험이 없는 기관이 선물시장을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향후 대상상품의 선정을 포함한 금융시장의 운영은 현물시장의 발전 방향과 맥을 같이 하여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금리자유화 조건의 가능성, 금융산업개편 문제 등 금융자유화의 여건과 진전속도 등에 대한 전망이 실물경제 여건에 따라 불투명한 상태이므로, 금융당국은 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의 종합적인 Master Plan을 가지고 상호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라. 만약 금융선물시장의 거래 및 감독이 비전문 관련기관에 의해 수행될 경우, 현물시장의 「조직화된 거래소(Organized Exchange)」내 (특히 주가지수선물의 경우)에서의 거래 및 감독 경험이 없는 비전문당국이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 된다.

마. 현물과 선물의 규제차이로 인한 시장교란(Regulation Arbitrage)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현선일치의 감독이 필요하다. 즉,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의 감독기관이 불일치하고 규제의 정도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이익극대화를 꾀하려는 투자자는 규제가 많은 시장에서 규제가 적은 시장으로 인위적으로 투자자금을 이동함에 따라 불필요한 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바. 상품시장과 금융시장은 유통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독특한 차이가 존재하는 바, 차익거래의 대응속도가 현저히 다르며, 또한 전산매매가 존재하는

주식의 경우 보다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이 분리되어야 한다.

사. 또한 금리선물의 경우, 한국의 고유한 통화금융정책의 기초가 갑자기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물금융당국이 선물가격 조작을 위한 현물의 매집·매석행위를 효율적으로 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금융실명제의 부재하에서는 이러한 기능이 더욱 강조된다 하겠다.

아. 금융선물의 경우, 시장의 비효율성(Market Inefficiency)과 시장조작(Manipulation)이 구별되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는 계속 감시하다가 감독당국은 원인이 판별되는 즉시, 현물 및 선물시장에 대한 조치를 동시에 취하며 대응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1992. 7. 28 한국선물학회·매경 주최 선물거래제 도입 정책토론회 발표내용, 선물경제, 1992. 8(제72호), 45면; 매경, 1992. 7. 29).

○ 박 상용(연세대 교수)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으로 볼 때 선부르게 선물거래법을 입법하고 관할권 문제를 논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상품선물의 경우 원시적인 유통단계, 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선물거래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금융선물의 경우 외환, 금리 등 금융시장 전반의 자유화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먼저 선물거래법의 입법과 규제를 논함은 시기상조이며 무엇보다 선물거래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타당성조사가 규제나 입법문제에 선행되어야 한다.

만일 입법과 관할권 문제가 불가피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면 분리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의 시장이 성격, 현실적 구조, 참여자 등이 서로 다르며 또한 선물의 규제를 위해서는 현물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992. 7. 28 한국선물학회·매경주최 선물거래제 도입 정책토론회 토론내용, 선물경제, 1992. 8(제72호), 47면; 매경, 1992. 7. 29).

③ 업계 등

○ 최 홍식(동양경제연구소)

금융선물 자체가 금융자산이므로 금융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감독해야 한다고 본다(1992. 7. 28 한국선물학회·매경 주최 선물거래제 도입 정책토론회 토론내용, 선물경제, 1992. 8(제72호), 48면; 매경, 1992. 7. 29).

(3) 기타 의견

○ 이 승찬(동양경제연구소)

규제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이다. 후생경제학 측면에서도 규제는 원칙적으로 비효율성을 갖는다. 특히 독점적으로 규제를 할 경우는 비효율성이 더 증가되고 이의 개선을 위해 규제기관간의 경쟁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물거래 감독부처가 선물거래의 감독에 대해서도 언제나 전문성을 가지고 감독할 수 있다는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 선물감독기관과 현물감독기관을 총괄하는 Super Agent를 둔다거나 감독기관간 정보시스템,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비할 경우 효율적인 규제가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선·현물감독기관이 분리된다고 하더라도 규제가 효율적이지 못할 경우 선·현물 규제기관에서 어느 한쪽의 규제가 Poor Quality이고 한쪽이 High Quality라면 경제는 High Quality에 의해 규제되는 시장쪽으로 경제주체들이 이동하게 됨으로써 시장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1992.7.28 한국선물학회·매경주최 선물거래제 도입 정책토론회 토론회내용, 선물경제, 1992.8(제72호), 49면; 매경, 1992.7.29).

○ 조 대우(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선물거래에 대한 관할권을 누가 가질 것이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제12차 선물거래심의회(1990.2)에서 비록 해외선물거래에 관련한 것이긴 했으나 부처간 상충이 있었으며 산하기관의 이해관계의 대립은 더욱 첨예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달청에서 국내선물거래소설립추진기본계획이 나오자 재무부는 외환관리법개정안에서 종래 선물상품은 증권 등의 규정에 준용하던 수준으로부터 일약 금융선물거래를 자본거래로부터 별도규정으로 명시할 만큼 비중을 상향시켰다. 이는 각 부처가 기왕에 누려온 기득권을 포기않음과 동시에 새로운 업무영성에 대해 선점을 뺏기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에 기인한다. 따라서 관할권의 문제는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이며 기왕의 노우하우도 있으므로 선물거래소와 법체계는 단일하게 하나 금융선물은 재무부에서 상품선물은 조달청(또는 경제기획원)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본다.

또 다른 방안은 보다 근본적으로 부처간 마찰소지를 없애고 효율적인 선물거래규제를 위해 미국의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같이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직속기관으로 하는 독립기관의 창설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선물경제, 1991.9(제61호), 11면)

3) 입법방식

선물거래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그 입법방식으로 첫째, 선물거래법은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을 모두 포함하는 단일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둘째,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을 분리하여 각각에 대한 개별법으로 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셋째, 금융선물을 다시 주가지수선물과 여타의 금융선물로 분리하여 각각을 별개의 법률에서 취급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조사보고서에서는 셋째의견을 개별법제정 의견에 포함시키고 있다.

(1) 단일법

① 정부관계기관

○ 조달청

선물은 실물과 완전별개의 대칭의 개념으로 정립되는 까닭에 선물거래만의 통일적이고 일관된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요구되므로 금융선물과 상품선물에 대한 단일법체계가 필요하다(조달청 선물거래제도입 추진담당자 인터뷰, 1992.6).

② 학 계

○ 박 현영(미국 일리노이 주립대 교수)

현재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에서 각각 별도로 상품선물거래법과 금융선물거래법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분리규제와 통합규제는 모두 각각의 장·단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선물거래법을 통하여 상품과 금융선물을 통합규제하는 쪽이 효과적일 것이다(한경, 1992.6.21).

○ 국 찬표(서강대 교수)

선물시장의 운영과 그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가칭 「선물거래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선물시장, 1986.9(창간호), 34면).

○ 김 기흥(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선물거래과정은 비교적 복잡하고, 매매를 할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투기적인 요인이 많으므로 철저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선물시장의 운영과 그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선물거래법」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선물경제, 1991.9 제61호, 23면).

③ 업 계

○ 현 재현(동약그룹회장·선물협의회회장)

관련법규의 제정이 시급한데 현재까지 학계와 업계의 의견은 다소 절차성의 차이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단일법하의 단일규제기관 및 종합거래소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한경, 1991.9.5).

(2) 개별법

① 정부관계기관

○ 재무부

금융시장개방과 자본자유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융선물거래법을 제정하여야 한다. 환율·금리·주가의 변동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변화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거래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자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기업 등 시장참여자들에게 선물거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등 선물거래 도입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부수적인 목적도 있다(한경, 1992.6.16).

○ 증권거래소

주가지수선물거래와 주식거래를 증권거래법으로 규제하면 규제수준의 균형·조화를 유지할 수 있으며, 현행 증권거래법의 공익과 투자자보호 장치에 의하여 주가지수선물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규제와 중개업자의 영업규제 등을 엄격히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증권거래법의 근거규정에 의하여 동법 시행령의 일부조항만 개정하면 시행이 가능하므로 관련법규의 정비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증권거래소 주가지수선물거래도입 추진담당자 인터뷰, 1993.1).

② 학 계

○ 손 천균(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우리나라가 1단계로 주가지수선물을 도입할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을 보아 판단할 문제이나 현상황으로 볼 때는 현물시장인 주식시장과의 유기적인 관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일단 기존의 증권거래법을 적용토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선물경제, 1990.7(제47호), 22~23면).

○ 박 상용(연세대 교수)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으로 볼 때 선부르게 선물거래법을 입법하고 관할권 문제를 논함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상품선물의 경우 원시적인 유통단계, 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선물거래제도를 도입하기에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금융선물의 경우 외환, 금리 등 금융시장 전반의 자유화가 미진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먼저 선물거래법의 입법과 규제를 논함은 시기상조이며 무엇보다 선물거래 도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충분한 타당성 조사가 규제나 입법문제에 선행되어야 한다.

만일 입법과 관할권 문제가 불가피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면 분리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는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의 시장이 성격, 현실적 구조, 참여자 등이 서로 다르며 또한 선물의 규제를 위해서는 현물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1992.7.28 한국선물학회·매경주최 선물거래제도 도입 정책토론회 토론내용, 선물경제, 1992.8(제72호), 47면; 매경, 1992.7.29).

(3) 기타 의견

○ 조 대우(충남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선물거래법을 제정해야 하며 이의 골격은 역시 미국형에 따르면 될 것이다. 물론 선물거래의 처음 도입시에는 주가지수선물은 증권거래소에서 상품선물은 상품선물거래소에서 별도로 운영하나 채권, 이자율, 외환선물 등 금융선물의 상장이 고려될 만큼 여건이 성숙될 경우 이를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킬 수 없으며 또한 현·선일치를 주장하는 증권거래소 역시 일본처럼 채권(국·공채)선물의 경우와 기타 금융선물의 상장에는 별 흥미를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중국에는 동일거래소원칙에 따라 단일선물거래법(가칭)을 적용할 것이나 출발시부터 통합시까지의 경과규정을 두어 운용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며 이 시점에 맞추어 종래의 법규 및 규정을 폐기하면 될 것이다(선물경제, 1991.9(제61호), 10면).

4) 규제형태

규제형태에 관한 논의는 거래소의 설립형태·규제기관 및 입법방식에 관한 논의와는 다소 차원을 달리 하는 것으로, 향후 선물거래제도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서는 첫째, 공적규제 즉, 정부에 의한 타율적 규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과 둘째, 거래소 또는 선물거래 관련협회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다.

(1) 공적 규제

○ 국 찬표(서강대 교수)

선물시장은 가장 진보된 형태의 투기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선물거래법」이나 또한 거래소규정 등을 통하여 엄격히 규제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선물시장, 1986.9(창간호), 35면).

○ 이 선(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시장에 잠재적인 투기수요가 크고 또한 경제전반에 걸쳐 비제도적인 시장에서의 거래가 많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거래소 설립초기에는 강력한 정부차원의 규제가 요망되고 차츰 옵션시장이나 선물시장의 제반여건이 성숙해짐에 따라 정부규제를 점차적으로 거래소차원으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987.4.2 증권거래소 주최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의 도입방안에 관한 세미나 발표내용, 주식, 1987.4(제224호), 39면).

○ 김 기홍(경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선물거래과정은 비교적 복잡하고 매매를 할 경우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투기적인 요인이 많으므로 철저한 감독과 규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선물시장의 운영과 그에 대한 규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선물거래법」의 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선물경제, 1991.9(제61호), 23면).

○ 윤 영섭(고려대 경영학 교수)

규제측면에서도 설립초기에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통합적 감독기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선물거래소 운영에 있어 가격조절과 투기근절에 관한 한 강력한 정부규제가 뒤따라야 한다(1992.7.28 한국선물학회·매경

주최 선물거래제도입 정책토론회 발표내용, 선물경제, 1992.8(제72호), 41면; 매경, 1992.7.29).

(2) 자율적 규제

○ 장 충식(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새로운 금융상품이 제대로 거래되고 투자자들의 헤징수단으로 이용되려면 자율적인 시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금융상품이 투자자의 위험 헤징수단으로 쓰여지는데 만약 이러한 시장개설 후 정부가 계속 규제한다든가 또는 특정기관투자자들에게 매입 또는 매각을 강요할 경우, 오히려 투자위험의 감소보다는 투자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앞으로 금융시장을 자율적인 시장메커니즘에 맡기겠다는 의지가 있어 가지고 이와 같은 금융시장이 개설된 후에도 정부는 금융시장이 파탄직면시에만 간여하고 될 수 있는대로 자율적 시장메커니즘에 맡겨 놓아야지, 새로운 금융시장 형성후에도 정부가 간여를 한다면 오히려 새로운 금융상품을 도입하지 아니한 것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된다. 따라서 새로운 금융상품의 경제적 기능과 기대되는 효과를 이해하고 투자위험의 감소를 정부의 규제보다는 투자가 스스로가 새로운 금융상품을 매매함으로써 스스로 투자위험을 감소해야 된다는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본다(1987.4.2 증권거래소 주최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의 도입방안에 관한 세미나 토론내용, 주석, 1987.4(제224호), 42~43면).

○ 이 천기(국제대 무역학과 교수)

거래소 설립의 주체가 누구이어야 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며 정부가 나서서 관주도일 수도 있고 민간주도일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 자금 추진력 등 제면에서 능률적이고 조직적일 수도 있겠으나, 장기적 측면에서 선물거래소의 설립만은 민간주도로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선물거래야말로 자유시장 체제원리를 대전제로 하기 때문에 관과는 처음부터 거리가 멀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기왕의 선물관련 협의회나(선물거래협의회)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등을 그 주체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선물경제, 1991.9(제61호), 24면).

○ 박 현영(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교수)

선물거래소의 성패의 열쇠는 시장참여자의 자율성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에는 CFTC(선물거래위원회)와 같은 국가통제기관이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민간기관인 CFTA(미국 선물거래협회)가 있어 자율적으로 자신들을 보호

한다(한경, 1992. 6. 21).

○ 최 진욱(시카고 드폴대학교 경제학 교수)

선물시장은 현물시장과는 달리 자유경쟁 속에서 시장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이 유지되어야 하며 정부 기관에서는 오직 투자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선물을 규제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효율적인 가격 형성이나 유동성 높은 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시장균형가격의 결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선물경제, 1992. 8(제72호), 13면).

○ 서 정의(대우경제연구소 이사)

우리의 옵션 및 선물시장의 도입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지만, 여기에서 또 한번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에 의하여 이를 육성·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은 버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가장 정확하다. market at price action에 의한 시장의 발전이 소망스럽다고 생각된다(1987. 4. 2 증권거래소 주최 금융선물 및 옵션거래의 도입방안에 관한 세미나 토론내용, 주식, 1987. 4(제224호), 47면).

○ 리처드 로슨(영국 증권선물협회 초대회장)

가. 금융시장의 발전속도가 빠를수록 업계의 자율규제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진다. 이는 다양한 금융상품과 금융기법이 개발될 경우 기존의 법적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 자율규제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증권업자와 당국자가 광범위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 직원들 또한 전문화되어야 가능하다. 한국도 시장개방을 앞두고 이 같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 자율규제는 어차피 법률에 근거를 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한국의 자율규제기능도 증권당국과 증권회사 등 관계기관들간에 밀접한 유대관계가 이어져야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자율규제는 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적절한 규제가 있는 시장을 선호한다(한경, 1991. 9. 7).

○ 성 영화(일간무역 기자)

결국 선물거래소 설립에 있어 성공의 관건은 최대한 정부규제기능을 줄이는 대신 부처간 상충되지 않는 일관된 자율우선정책을 펼치므로써 적극적으로 제반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선물경제, 1991. 9(제61호), 15면).

○ 한 완선(대한증권업협회 전문위원)

기본적으로 산업과 시장에 의한 자율규제를 우선으로 하고 직접규제는 자율규제의 보완적 관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본다. 즉,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거래조작 등)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되 과도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는 포지션 제한, 증거금의 조정 등은 그 성격상 선물거래소와 청산소에 의해 자율적으로 조절되게끔 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계약의 설계와 승인 역시 시장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규제권이 거래소에 위임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선물경제, 1991.9(제61호), 19면).

○ 여 훈필(제일선물주식회사)

상품거래소가 생기면 거래소의 자율성이 확립되어야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시장에 대한 참여도가 높아진다. 외적인 요인이나 정부의 정책변화에 좌우된다면 시장에 대한 신용도가 떨어지고 거래소의 위상을 정립시킬 수 없다. 따라서 상품거래소가 자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한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것보다는 독립체제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각 부처의 협조를 얻을 수 있고 부처간에도 유기적 관계가 정립되어 거래소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본다.

시장규모가 적은 초기단계에서는 경제적 규모에 따른 비용절감을 위해 거래방식이 동일한 선물거래를 분리운영하는 것보다는 통합운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운영의 묘를 살려 선물거래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자율적으로 거래소가 운영되도록 운영위원회를 독립적으로 발족시켜 관리·감독하여야 할 것이며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중개사와 실수요자의 역할을 분담시켜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참여시켜 나아가야겠다(선물경제, 1992.7(제71호), 19면).

2. 각계 의견의 정리 및 평가

이상에서는 선물거래제도의 도입을 구체화하기 위한 선물거래법의 제정에 있어 선결되어야 할 주요입법사항인 거래소의 설립형태·규제기관·입법방식 및 규제형태의 4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이들 의견을 정리·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1) 거래소의 설립형태·규제기관 및 입법방식

우선 각계의 의견을 정리해 보면 논자에 따라 설립형태, 규제기관 및 입법방식의 선택에 대한 근거논리에 일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거래소의 설립형태에 있어서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의 통합형을 주장하는 자의 대부분이 일원적 규제기관과 단일법의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고,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의 분리형을 주장하는 자의 대부분은 현선일치에 의한 규제기관과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에 대한 별개의 법률제정을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거래소의 설립형태에 있어 상품선물과 금융선물로 분리하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금융선물을 주가지수선물과 여타의 금융선물로 분리하여 별개의 거래소에서 거래하고 규제기관과 입법방식도 세분화자는 주장이 상당수 있었다. 이러한 비교적 일관성있는 논리의 흐름을 토대로 각계 의견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안 : 통합형 → 일원적 규제기관 → 단일법

① 장 점

- 가. 거래방식이 독특한 선물산업을 전문화할 수 있음
- 나. 상품선물과 금융선물간의 연계투자에 편리함
- 다. 다양한 선물상품의 거래가 가능함

② 단 점

- 가. 현물과 선물에 대한 규제법률, 감독기관 및 취급거래소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양시장관리의 일체성 확보가 곤란함
- 나. 증거금융, 가격제한폭 설정 등 현물과 선물시장관리의 균형 및 조화가 어려우므로 선물거래 도입이 오히려 현물시장의 수요잠식 및 가격급변동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음

- 다. 국내경제여건 및 해외선물시장의 동향을 고려할 때, 금융선물 시장 중심이 될 것이므로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없는 상품시장의 감독기관이 시장관리를 담당함으로써 금융시장이 교란될 가능성이 큼
- 라. 현물가격과 선물가격간의 연계성 미흡으로 투기거래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을 수 있음

(2) 제2안 : 상품선물·금융선물 분리형 → 현선일치에 의한 규제기관
→ 개별법

① 장 점

- 가. 현물시장과 선물시장을 종합관리함으로써 정부의 일관된 정책 수행이 용이함
- 나. 현물시장 관리기관에서 선물시장도 함께 관리하므로 증거금요율의 조정 및 매매거래규제 등에 관하여 양시장의 여건을 고려한 시장관리가 가능함
- 다. 국제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이 높음

② 단 점

- 가. 취급품목의 부진시 해당거래소의 존립이 어려움
- 나. 거래소별 취급상품의 연계투자가 곤란함

2) 규제형태

다음으로 규제형태를 보면 그 관점이 위의 제1안, 제2안 및 제3안을 주장하는 자에 따라 일치하지는 아니하며, 공적 규제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과 자율적 규제가 선물거래제도의 정착 및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고루 비중있게 제시되고 있다.

(1) 공적 규제

① 장 점

- 가. 거래과정이 복잡하고 가장 진보된 형태의 투기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선물거래를 철저하게 규제할 수 있음
- 나. 현물시장과의 조화 기타 필요시 가격조절이 용이함

다. 위탁자 보호에 실효성을 기할 수 있음

② 단 점

가. 선물시장을 전반적으로 경직화시킬 우려가 있음

나. 시장경제에 의한 가격형성을 왜곡시켜 장기적으로 보아 선물 거래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2) 자율적 규제

① 장 점

가. 시장경제에 의한 가격형성으로 신용도를 높일 수 있고 거래소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음

나. 투자자의 선물시장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음

다. 선물거래업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② 단 점

가. 소극적 규제에 의하여 선물시장에서 지나친 투기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나.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증거금의 조정 등 투자자보호에 미흡할 수 있음

Ⅲ. 현행법, 관련입법안 및 외국의 입법례

1. 현행법

현재 국내에는 선물시장이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며, 국내거주자 또는 법인의 해외선물거래소를 통한 선물거래가 1973년의 제1차 석유파동을 계기로 조달기금법, 외국환관리법등 관계법규를 근거로 1974년부터 허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석유파동에 이은 세계적인 자원파동으로 인하여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으며, 이에 따라 원자재의 안정적 확보 및 가격안정이란 측면에서 해외선물거래소를 통한 선물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선물거래에 관한 현행법규를 국내선물거래시장의 개설등에 관한 법규와 해외선물거래시장의 이용등에 관한 법규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내선물거래시장의 개설등에 관한 법규로는, 증권거래법이 제2조(정의)에서 주가지수선물거래 등을 유가증권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1991.12.31 개정), 제73조(업무)에서 증권거래소의 업무범위에 선물거래시장의 개설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1987.11.28 개정), 제94조(업무규정)에서 증권거래소가 선물거래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업무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개정).

다음으로 해외선물시장의 이용등에 관한 법규는 다시 상품선물거래의 경우와 금융선물거래의 경우로 나눌 수 있다. 해외상품선물거래에 관한 법규로는 조달기금법(제12조 선물거래), 조달기금법시행령(제12조 선물거래), 기업예산회계법(제31조 수탁업무), 기업예산회계법시행령(제40조

수탁업무), 주요물자해외선물거래관리규정(대통령령), 주요물자해외선물거래관리규칙(조달청훈령), 선물거래중개업무및관리에관한규정(조달청고시), 외국환관리규정(재무부고시)등이 있다. 그리고 해외금융선물거래에 관한 법규로는 외국환관리법(제3조 정의, 제21조 자본거래의 허가, 제23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 외국환관리법시행령(제7조 금융선물계약), 외국환관리규정(재무부고시)등이 있다.

< 선물거래 관련법규 및 그 내용 >

1. 국내선물거래

법령	관계조문	내용	비고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 시행령에서 주가지수선물거래 등을 유가증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① 이 법에서 유가증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증권 또는 증서와 유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것	* 1991.12.31 개정 - 현재 시행령에 관련규정은 없음
	제73조 (업무)	○ 증권거래소의 업무범위에 선물거래시장의 개설업무를 포함하고 있음. ① 증권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유가증권시장(선물거래시장을 포함한다)의 개설업무	* 1987.11.28 개정 - 증권거래소가 유가증권 선물거래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제94조 (업무규정)	○ 증권거래소가 선물거래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별도의 업무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①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련되는 사항은 증권거래소의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선물거래시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업무규정을 정할 수 있다.	* 1987.11.28 개정

2. 해외상품선물거래

법령	관계조문	내용	비고
조달기금법	제12조 (선물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함. ① 조달청장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물거래의 내용과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달기금법 시행령	제12조 (선물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축물자중 외자를 구매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해외선물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함.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자중 외자를 구매함에 있어서 국제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대비하여 가격안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국의 상품거래소에서의 선물거래에 의한 방법으로 이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물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업예산 회계법	제31조 (수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회계가 수탁업무를 취급 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특별회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탁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기업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40조 (수탁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달특별회계는 일반의 위탁에 의하여 선물거래를 수탁할 수 있도록 정함. ① 특별회계는 위탁자의 부담으로 그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일반의 위탁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수탁업무를 할 수 있다 3. 외국에서의 선물거래 ② 제1항 각호의 수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중 부서의장이 정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수탁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관계조문	내용	비고
주요물자해의 선물거래 관리규정 (대통령령)	총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상품선물거래소의 이용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본문 생략).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선물거래의 위탁 및 그대행) 제4조(위원회) 제5조(선물거래대상품목) 제6조(선물거래수량의 제한) 제7조(보고) 제8조(위원회에 대한 통보) 제9조(외국환거래) 제10조(위탁중거금등의 수불) 제11조(손익의 귀속) 제12조(세부사항) 	* 1982.1.20 개정
주요물자해의 선물거래 관리규칙 (조달청 훈령)	총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선물거래소의 이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본문 생략). 제1조(목적) 제2조(선물거래의 퇴인의 자격) 제3조(선물거래대상품목) 제4조(선물거래계정개설 신청 및 승인) 제5조(선물거래계정개설) 제6조(선물거래계정개설 내용의 변경) 제7조(선물거래중개인의 지정) 제8조(거래위탁 및 수탁) 제9조(선물거래자금의 확인) 제10조(보고 및 검사) 제11조(시장조치등) 제12조(선물거래위탁대행자) 제13조(선물거래협의회 설립) 	* 1991.7.2 개정
선물거래중개업무및관리에관한규정(조달청 고시)	총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물거래중개인의 업무수행에 관한 준칙 및 조달청의 중개인 관리업무에 대한 기준을 정함(본문 생략). 제1조(목적) 제2조(중개인의 자격) 제3조(회원과 장비) 제4조(계정개설) 제5조(거래주문등 수락) 	* 1991.7.2 개정

법령	관계조문	내용	비고
선물거래중개업무및관리에관한규정(조달청고시)	총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거래위험의 사전고지) 제7조(부당행위 금지) 제8조(고객자금의 분리계리) 제9조(거래실적) 제10조(보고, 감사) 제11조(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의 금지) 제12조(업무정지등 제재) 제13조(취소) 제14조(선물거래관련종사자 전문지식 함양) 	* 1991.7.2 개정
외국환관리규정(재무부고시)	제2-25조(국외지점의 업무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상품선물거래에 대한 국외지점 업무제한의 예외를 정함. ① 국외지점을 설치한 자는 그 국외지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허가절차는 제10-3조(자본거래의 허가절차) 및 제10-5조(외국환은행 등의 자본거래)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다음 각목의 경우를 제외한 거주자에 대한 대출 및 신용공여 바. 제10-38조(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상품선물거래 또는 금융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에 대한 필요한 자금의 대출 및 신용공여 	* 1993.1.29 개정
	제10-11조(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상품선물거래를 함에 필요한 자금과 정산에 따른 차액을 외국에 보유하기 위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및 신고의 예외를 정함.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금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 1993.1.29 개정

법령	관계조문	내용	비고
외국환관리 규정(재무 부 고시)	제10-11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6. 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거래를 함에 필요한 자금(위탁 증거금, 추가증거금, 중개수수료 및 기타 필요한 경비)과 정산에 따른 차액을 외국에 보유하기 위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거래를 하는 경우 나. 거주자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바에 의하여 행하는 해외상품선물거래	* 1993.1. 29 개정
	제10-38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 해외상품선물거래에 필요한 자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지급 또는 보증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가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허가 및 신고의 예외를 정함.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 및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3. 거주자가 제10-11호(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제6호 각목에 해당 하는 해외상품선물거래 또는 금융선물거래에 필요한 자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비거주자가 지급 또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지급 또는 보증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가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1993.1. 29 개정
	제12-24조 (현지법 인금융기 관등의 업무제한)	○ 해외상품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에 대한 필요한 자금의 대출 및 신용공여의 현지법인금융기관 등의 업무 제한에 대한 예외를 정함.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25조(국외지점의 업무제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허가 요하지 아니한다. 3. 제10-38조(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상품선물거래 또는 금융선물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에 대한 필요한 자금의 대출 및 신용공여	

3. 해외금융선물거래

법령	관계조문	내용	비고
외국환관리법	제3조 (정의)	<p>○ 자본거래의 한 형태인 금융선물계약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함.</p> <p>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6. “금융선물계약”이라함은 금융선물시장에서 행하여지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와 관련된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p>	*1991.12.27 전문개정 -해외금융선물의 활성화와 국내금융선물거래소의 설립에 대비하여 금융선물거래에 대한 관리 근거를 명시함
	제21조 (자본거래의 허가)	<p>○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에 금융선물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p> <p>6. 거주자와 다른 거주자간의 금융선물거래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외국환과 관련된 경우에만한다)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융선물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 등에 관한 거래</p>	*1991.12.27 전문개정
	제23조 (허가 및 신고의 예외)	<p>○ 21조의 예외조치로 외국환은행이 그 업무로 행하는 것으로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음.</p> <p>1. 제21조 제1호 내지 제3호·제6호·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중 외국환은행이 그 업무로서 행하는 것으로서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p>	*1991.12.27 전문개정

법령	관계조문	내용	비고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7조 (금융선물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에 규정된 금융선물계약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함. 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선물시장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장내에서 행하여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을 말 한다. 1. 지급수단·증권 또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외국환등”이라 한다)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등을 통하여 정산할 수 있는 거래 2. 외국환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 및 이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이하 “지수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등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3.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 일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나. 외국환등의 매매거래 다. 지수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 1992. 7. 3전문개정 -1991. 12. 27 전문개정된 외국환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외국환관리 규정(재무부 고시)	제2-25조, 제10-11조, 10-38조 및 제12-2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지점의 업무제한, 자본거래에 있어서의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현지법인금융기관 등의 업무제한 등에 관한 규정이 해외상품선물거래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됨. 단, 제10-11조의 경우는 제6호 가.에서 해외금융선물거래를 규정함(본문 생략). 	* 해외상품선물거래의 관계 법령중 외국환관리 규정 참조.

법령	관계조문	내용	비고
외국환관리 규정(재무 부 고시)	제18-2조 (한국은행 총재에의 위임)	○ 한국은행총재에의 권한위임사항중 외국환관리법 제21조의 '자본거래의 허가 권한'이 포함되어 있음(제2항 제9조)	
	제13장 금융선물 거래등 제13-1조 ~ 제13-17조	○ 금융선물거래등의 적용범위, 용어의 개념정의 및 목적을 비롯하여 금융 선물거래와 장외금융선물거래에 관 한 세부 사항을 정함(본문 생략). 제1절 통칙 제13-1조(적용범위등) 제13-2조(정의) 제13-3조(금융선물거래등의 목적) 제2절 금융선물거래 제13-4조(거주자의 금융선물거래) 제13-5조(금융선물거래의 반대거래 등) 제13-6조(실수요증빙 제출등) 제13-7조(외국환은행의 금융선물거 래) 제13-8조(세부시행사항) 제3절 장외금융선물거래 제13-9조(거주자의 장외금융 선물거 래) 제13-10조(통화옵션거래의 허용범 위) 제13-11조(이자율옵션거래의 허용범 위) 제13-12조(선도금리계약거래의 허용 범위) 제13-13조(스왑금융거래의 허용범 위) 제13-14조(장외금융선물거래의 변경 ·취소 및 반대거래) 제13-15조(실수요증빙제출등) 제13-16조(외국환은행의 장외 금융 물거래) 제13-17조(세부시행사항)	* 1992. 8. 20 개정 - 금융선물 거래등에 관한 종래 의 규정을 하나의 장 으로 집약 함과 아울 러 관련규 정을 대폭 신설함.

2. 관련입법안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각각 '92년 6월 초순과 중순경에 선물거래법(안)과 금융선물거래법(안)이라는 명칭으로 입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양 법안의 제정이유, 주요골자 및 쟁점사항을 나누어 비교·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정이유

(1) 선물거래법(안)

○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70년대 초반 1차 자원파동직후 정부가 도입한 선물거래제도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경영수단으로 점차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용실적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를 맞고 있으나 선물거래에 대한 기본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가운데 최근 선물거래 대상품 및 이용기법이 복잡·다양화되고 있고 국내외 이용 및 규제근거가 각종 법령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의 효율적인 규제를 기하고 동 제도의 조기정착 그리고 민간의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선물거래에 대한 통일적인 법률 제정이 시급한 실정에 있음.

○ 또한, 가격 및 시장정보의 신속한 전파로 지역간 가격의 평준화를 유도하고, 미래가격에 대한 예측기능을 통하여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며,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중심시장 기능의 수행으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정부의 각종 가격지정책기능의 부분적 흡수를 통하여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도모하고, 민간주도의 물가안정을 촉진하며, 투기성 부동산자금의 제도권내 흡수로 산업자금화하고, 투자위험 감소를 통한 기업의 생

산활동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도모 그리고 국내경제의 국제화에 따른 대응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국내 선물거래소 설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금융선물거래법(안)

○ 전세계적으로 금융의 자유화와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 각국에서는 금리, 환율 및 주가 등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위험을 최소화하는 위험회피수단으로서 금융선물거래라는 최신 금융기법을 이미 도입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도 금융의 자유화·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점차 각종 규제 조치를 완화해 나갈 예정으로 있어 이에 따른 금융상품의 가격변동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각 경제 주체가 금리, 환율 및 주가 등의 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의 개방화·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한편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이 법을 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관련입법안의 주요골자 >

구 분	선물거래법(안)	금융선물거래법(안)	비 고
총 칙	<p>목적(제1조) 선물거래소의 조직, 선물시장에서의 거래관리, 해외선물거래의 이용 등을 규정함으로써 선물시장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고 선물거래위탁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상품의 생산 또는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p> <p>정의(제2조) ① '선물'의 개념정의 '선물'이라 함은 대량의 거래가 가능한 실질적·관념적 상품 또는 그러한 상품의 가격수준을 지수화한 것으로서 규격, 등급, 기타의 거래조건을 표준화하고 장래의 일정시점을 거래기일 및 인수기일로 정하여 선물거래소가 거래의 목적물로 지정한 것을 말함. ② 선물거래의 종류 가. 매매형 거래 나. 지수형 거래 다. 옵션 거래</p>	<p>목적(제1조) 국내 금융시장의 발전과 금융선물거래 등의 위탁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선물거래소를 설치·운영하고 금융선물거래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금융선물거래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p> <p>정의(제2조) ① 금융선물거래의 대상 통화, 유가증권, 예금계약에 의한 채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은 제외). ② 금융선물거래의 종류 가. 매매형 거래 나. 지수형 거래 다. 옵션 거래</p>	* 1991. 12. 31.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8호의 개정으로 증권거래법상의 유가증권 범위가 확대됨.
거래소	<p>선물거래소(제3조~제51조) ① 법인격 및 조직 ② 설립요건 및 허가 ③ 회원 가. 회원의 자격 나. 출자와 책임 다. 가입 및 탈퇴 라. 지분의 양도와 반환 마. 회원보증금 바. 위약손해배상 공동 기금 ④ 임원 ⑤ 선물거래 가. 선물거래 당사자 나. 거래증거금 다. 시세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 라. 거래 등의 제한</p>	<p>금융선물거래소(제3조~제39조) ① '한국금융선물거래소'의 설립 ② 자본금 ③ 거래소의 임원 ④ 회원의 자격 ⑤ 결제기관, 결제회원 ⑥ 회원보증금, 거래증거금 ⑦ 금융선물거래의 수탁 ⑧ 업무규정 ⑨ 위장거래 등의 금지 ⑩ 감독</p>	

구 분	선물거래법(안)	금융선물거래법(안)	비 고
선물 거래업	선물거래관련업 (제52조~제88조) ① 선물거래업 가. 영업의 종류와 허가 나. 수탁계약 다. 위탁중거금 라. 금지 행위 마. 선물거래사의 등록 ② 선물투자업 가. 선물투자계약 나. 거래의 제한 다. 금지행위 라. 허가 등의 준용	금융선물거래업 (제40조~제65조) ① 허가제 ② 금융선물거래업자의 자격 및 허가의 유효기간 ③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의 변경 인가 ④ 업무규제 ⑤ 감독	
해외 선물 거래	해외선물거래 (제89조~제92조) ① 대상 및 이용 ② 외국환 사용 ③ 실물인수도		*금융선물 거래법 (안)에는 관련규정 없음.
선물거 래위원 회	선물거래위원회 (제93조~제113조) ① 소관사항 ② 구성 ③ 사무소의 설치 ④ 관리 감독		*금융선물 거래법 (안)에는 관련규정 없음.
관련 단체	선물거래관련단체 (제114조~제126조) ① 선물협회의 허가 ② 선물협회의 업무 ③ 선물연수원	한국금융선물거래협회 (제69조~제77조) ① 설립 ② 협회의 가입의무 ③ 업무	

3) 쟁점사항

(1) 거래소의 설립형태

① 선물거래법(안)

선물거래소에서의 거래대상을 '거래가 가능한 실질적·관념적 상품 또는 그러한 상품의 가격수준을 지수화한 것 중 …… 선물거래소가 거래의 목적물로 지정한 것'(제2조)이라고 함으로써,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을 통합하는 거래소를 예정하고 있다.

② 금융선물거래법(안)

금융선물거래소에서의 거래대상을 '통화, 유가증권, 예금계약에 의한 채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의 유가증권은 제외)으로서 금융선물거래소가 이에 대하여 금융선물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표준화한 표준물'(제2조)이라고 함으로써 상품선물거래소와 금융선물거래소의 분리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

(2) 규제기관

① 선물거래법(안)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을 포함한 모든 선물거래의 규제·감독은 선물거래 위원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경제기획원이 관할권을 갖도록 되어 있다.

② 금융선물거래법(안)

금융선물의 규제·감독은 금융현물시장의 관할권을 가진 재무부가 행하도록 되어 있다.

(3) 입법방식

① 선물거래법(안)

법률안의 내용상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통합형을 예정하고 있다.

② 금융선물거래법(안)

법률안의 명칭 및 내용상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의 분리입법을 전제로 하고 있다.

(4) 규제형태

양자 모두 규제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전체 규정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공히 공적 규제를 위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외국의 입법례

각국의 선물거래소 설립형태를 보면, 상품선물이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에는 예외가 없으나, 금융선물은 나라에 따라 ① 미국과 같이 금융상품도 '상품(commodity)'의 하나로 보아 기존의 상품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나라, ② 영국과 같이 기존의 상품거래소와는 별도로 설립한 금융거래소에서 거래하는 나라, ③ 일본과 같이 기존의 상품거래소에서 거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금융선물의 대상이 되는 현물의 종류에 따라 거래소를 달리하여 채권 및 주가지수에 대한 선물거래는 기존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하고 금리 및 통화에 대한 선물은 금융선물거래소를 새로이 설립하여 거래하는 나라 등의 차이가 있다.

각국의 선물거래 규제기관을 보면 ①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을 구분하지 않고 특정한 정부기관에서 이를 관할하는 경우(미국형), ② 현선일치의 원칙에 따라 현물을 관할하는 정부기관에서 당해 선물도 관할하는 경우(일본형) 및 ③ 정부기관에 의한 규제는 거의 없고 규제전반을 거래소 등의 자율에 맡기는 경우 등이 있다(영국형).

각국의 선물거래에 관한 입법방식은 ①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을 단일법에서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미국형), ②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을 개별법에서 취급하는 경우(일본형) 및 ③ 특정 법률에 의한 규제는 거의 없고 거래소 등의 자치법규에 맡기고 있는 경우(영국형) 등이 있다.

선물시장에 대한 규제형태는 정부기관에 의한 공적 규제와 선물거래소 또는 협회 등에 의한 자율적 규제로 구분된다. 미국의 경우 독립된 연방 규제기관으로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 CFTC)를 설치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거래를 공정하게 집행한다는 관점에서 거래소와 시장참가자 및 청산기관을 규제하고 있다.

반면에 영국의 경우는 정부의 규제가 약하고 오히려 각 거래소에 의한 자율적 규제가 강한 편이며, 일본은 그 중간정도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 미 국

미국에서 선물거래소가 처음 설립된 것은 1848년이었으며, 현재 옵션 상품을 상장거래하고 있는 일부 증권거래소를 제외하고 순수하게 선물 및 선물옵션상품만을 거래하고 있는 상품거래소는 10여개가 있다. 이들 거래소를 비롯한 상장참가자들은 1936년의 상품거래법과 1974년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법 및 1978년의 선물거래법에 의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독립적인 연방규제기관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이를 시행하고 있다.²⁾

1936년 상품거래법(1936 Commodity Exchange ACT)은 1929년 공황의 여파로 투기억제 뿐만 아니라 투자자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22년 곡물선물법의 개정법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개정법은 우선 규제범위를 면화와 곡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농산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투자자보호라는 개정취지에 따라 선물거래업자들도 규제기관인 농수산부에 등록하도록 하였으며, 선물거래업자가 고객의 자금을 별도의 계정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가격조작 또는 사기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과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헤지(hedge) 목적이 아닌 전적으로 투기목적인 선물거래에 대하여는 거래한도를 두었으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물거래소는 현물거래가 이루어지는 장

2) Futures Industry Association, Futures Trading Course Book, (Washington D.C. ; Futures Industry Association, 1988), pp. 150~151 ; 한국증권학회, 「신상품도입 타당성조사」, (한국증권학회, 1990.12), 254~256면 참조.

소에만 설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현물거래와 선물거래가 별개의 장소에서 행해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였다. 1936년 상품거래법은 1968년에 큰 폭의 개정이 있었는데, 그 주요골자는 규제품목을 확대하고 거래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자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는 것이었다.

이후 1974년에 상품거래법의 개정법으로서 상품거래위원회법(1974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ACT)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우선 '상품(commodity)'의 개념정의방식을 한정열거주의에서 포괄열거주의로 변경하고 현재 선물거래의 대상품목으로 취급되고 있는 것 또는 장래 선물거래의 대상이 될 것도 전부 '상품'이라는 개념에 포함시켰다. 또한 선물거래위원회법은 지금까지의 선물거래규제기관이었던 농산부산하의 상품거래청(Commodity Exchange Authority)을 폐지하고 선물거래의 일원적인 감독을 위하여 대통령직속인 '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 CFTC)'를 창설하여, 증권의 현물거래에 관하여 포괄적인 규제권한을 가진 증권거래위원회(Security Exchange Commission : SEC)와 마찬가지로의 준사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였다.³⁾

1978년의 선물거래법(1978 Futures Trading Act)은 주정부에 대하여 보다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선물거래법에 의하면 주정부는 선물거래에 적용되는 법률상의 요건을 포함한 상품거래법의 규정(provision) 또는 CFTC의 규제(rule), 규정(regulation) 기타 명령(order)의 위반에 대하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CFTC가 지정한 거래소와 CFTC로부터 인가를 받은 장내중개인(floor brokers)은 주정부의 관할권으로부터 배제된다. 더욱이 1982년과 1986년 선물거래법의 개

3) Ibid., p. 150.

정으로 주정부는 상품거래법의 부정방지(anti-fraud)규정 또는 CFTC에 의하여 제정된 부정방지규칙의 위반에 대하여 주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 등 그 권한이 대폭 확대되었다.

2) 영 국

영국에는 1877년에 런던금융거래소(LMG)가 설립된 이래 국제금융거래소(LIFFE) 등 총 10개의 선물거래를 하는 거래소가 있다. 금융 및 증권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자율적 규제에 맡겨 왔던 전통에 따라 1986년 금융서비스법(1986 Financial Services Act)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성문법에 의한 정부의 규제가 없었으며, 현재에도 자율적 규제가 전체 규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⁴⁾ 다만 1986년 Big Bang이라 불리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선물거래는 성문법에 의한 규제를 받게 되었다. 금융서비스법에 따라 무역산업부(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산하 정부기관인 증권투자위원회 (Securities Investment Board ; SIB)가 모든 종류의 투자업무를 감독하게 되었다.

금융서비스법은 투자업무를 하는 경우에 대한 면허 기타 행정규제 등을 정한 법으로서 거래소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규정은 없고 다만 거래소를 인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증권거래소와 선물거래소가 인가받은 투자거래소(Recognized Investment Exchange ; RIE)로 되었으며, 기존의 청산회사들이 인가받은 청산회사(Recognized Clearing Houses ; RCH)로 되었다. RIE나 RCH로 인가를 받으면 금융서비스법에서 요구하는 번잡한 보고업무에서 면제되게

4) 高橋 弘, 「イギリスの先物・オプション市場」, (東洋經濟新報社, 1990), 11 ~13頁.

되어 있어, 실제로 영국의 거래소들은 거의 자율적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거래소에서 상품을 결정하는 것도 거래소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⁵⁾

3) 일 본

일본에는 현재 20여개의 거래소가 있으며 여타의 나라들과는 달리 대부분이 1품목 단일거래소의 형태를 취하면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선물거래관련법규에 있어 일본이 다른 나라와 구별되는 두드러진 특징은 상품선물과 금융선물, 그리고 금융선물은 다시 유가증권선물과 협의의 금융선물로 나누어지고 각기 성격이 다른 별개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며 각기 별개의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상품선물거래는 상품거래소에서 행하여지고 있으며, 1894년(명치 26년)에 거래소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되어 수차례 걸쳐 개정된 상품거래소법(1950년 제명개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⁶⁾

금융선물거래에 있어 채권과 주식 및 주가지수선물 등 유가증권과 관련된 선물은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일본에서는 1943년 증권거래소법을 제정하여 거래소법에서 증권거래에 관한 규제를 분리시키고, 당해 증권거래소법이 1948년에 전면개정(통상 1948년 성립으로 취급)된 이래로, 1985년에 채권선물거래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증권거래법을 기초로 유가증권의 실물거래만 행해졌었다. 즉, 1985년 증권거래법의 일부개정으로 비로소 국채를 대상품목으로 하는 금융선물거래가 출범하게 된 것이다. 금융선물거래에 있어 유가증권선물거래 이외의 금리 및 통화에 대한 협

5) 上掲書, 115~119頁.

6) 堀口 豆, “わが国における先物取引法の形成と問題點”, 「判例タイムズ」, 第701號, (判例タイムズ社, 1989. 9, 10), 6~10頁.

의의 금융선물거래는 금융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며, 1988년에 제정된 금융선물거래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더욱이 일본은 해외선물거래소의 이용에 대해서는 '해외선물거래에 관한법'에서 따로이 취급하고 있다.

규제기관으로는 농산물선물은 농림수산성(MAFF)이, 공업용원자재선물은 통산성(MITI)에서 그리고 주가지수선물을 포함한 금융선물은 대장성(MOF)이 각기 관할하여 규제하고 있다.

IV. 입법방향에 대한 제언

1. 거래소의 설립형태·규제기관·입법방식 및 규제형태는 선물거래법을 제정함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선물거래제도가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는 규모가 큰 제도이고 또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한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제적·법적 효율성이란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먼저 거래소의 설립형태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경제적 효율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규제기관을 정함에 있어서는 규제의 효율성을 우선 시켜야 할 것이다. 이 경우 관련부처가 각자의 기득권 또는 관할권 주장만을 되풀이 한다면, 선물거래제도의 도입 자체가 지연되거나 제도의 바람직한 운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⁷⁾

3. 다음으로 입법방식에 관하여 입법론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경우,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각개의 법률제정시점에 있어서의 제반 고려여건의 차이·입안자의 상이함 등으로 인하여 법령 상호간의 충돌 또는 저축이 발생하게 되어 규제의 효율성을 반감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이의 해결을 위하여 법개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도 입법기술상의 어려움,

7)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각각 선물거래법안과 금융선물거래법안을 준비하여 국회에 상정하기에 앞서 관계부처간 협의과정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공부와 농수산부에서도 별도의 법안작성 및 독자적인 제도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매경, 1992.6.17). 결국 관계부처간의 협의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법률제정 자체를 금년초에 출범한 현정부에 넘긴다는 선에서 일단락되었다(조선, 1992.9.23).

개정안 확정절차의 까다로움 등 곤란한 문제가 많으며, 또 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단일법을 제정하여 일관성있는 규제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차후에 특정 부분에 대한 보다 상세한 규정이 필요하다면 이를 보완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불충분하다면 모법의 체계 하에서 발전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만일 분리입법이 불가피하다고 할 때에는, 각 개별법을 제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충분히 검토함과 아울러 관계부처간의 협의,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입법에 충실을 기함은 물론 이와는 별도로 입안자간의 실질적인 협의 또는 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서, 각각의 개별법 상호간에 충돌 또는 저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할 것이다.

4. 마지막으로 규제형태에 있어서는, 우선 도매거래, 금융거래등 유사거래에 대한 현행법제의 규제방식 및 현재의 규제관행이 어떠한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실태파악이 행해져야 할 것이며, 이와 함께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5. 한편, 그 동안 선물거래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는 관할권을 축으로 하여 경제계 중심으로만 논의되어온 감이 없지 않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들 이외에도 그 중요성에 비추어 제도의 도입에 앞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사항들이 다수 있다. 예컨대 국내에 선물거래소가 개설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해외선물거래소의 이용은 계속될 것이 자명한데 향후 이에 대한 규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

제, 규제의 목적을 여느 거래관계법과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적절한 운영을 추구하면서 당해 거래시장을 경직시키지 않는 가운데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질서를 확립·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때 최종적으로 귀착되어지는 투자자보호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특히 투자자보호의 문제는 개인의 재산적 손실을 예방하거나 전보해준다는 차원을 넘어서 거래시장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이고 또 선물시장에 참입한 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선물거래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6. 요컨대 전술한 사항들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선택방안들은 거의 모두 제시되었다고 본다. 더 이상 이에 대한 결정을 지체하여 선물거래제도의 도입을 미루는 것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관계기관·학계·업계 등은 협의에 의하여 합리적인 선택의 기준을 확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도입순위에 관한 각계의 의견

1) 상품선물의 우선도입

(1) 정부관계기관

○ 조달청

○ 상품선물거래대상품목으로 인삼과 담배가 적절하다고 보고 금산 및 전국인삼주산지에 담당자를 파견하여 생산물량과 유통과정의 조사작업에 착수하였다. 이는 인삼과 담배의 경우 국가 관리의 전매품으로 재배연수에 따라 품질과 규격이 동일한데다 수요가 많고 가격의 변동폭이 커서 선물거래에 필요한 요건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삼의 선물거래가 실시되면 가격이 안정되어 제조업자들은 생산에 지속을 기할 수 있고 수출시에 객관적인 가격체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매경, 1989.10.20).

○ 상품거래소에 상장시킬 대상품목의 선정기준을 시장규모가 크고 가격변동이 심한 상품, 규격등급화가 가능한 품목 및 즉시거래가 가능한 품목으로 정하고, 1차로 일반미·콩·닭고기·달걀·은 등 5개품목을 상장대상품목으로 잠정 확정하였다. 이들 품목의 선물거래를 정착시킨 후 2단계로 금과 일부 비철금속·특용작물·쇠고기·돼지고기·화섬사 등 주요상품 전반으로 확대할 계획이다(매경, 1991.5.6).

(2) 업계 등

○ 이 현열(선물거래협의회 사무국장)

상장상품은 우선 생축인 닭·돼지·소와 냉동축산물·고추·마늘·금·전기동 등의 일반상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부동산금은 많아도 건전한 투자대상이 없고 농민들은 연례행사처럼 돼지·고추·마늘·양파 등 각종 파동을 겪느라 생산의욕을 잃고 있으며 도시소비자는 중간상인의 농간으로 인하여 과잉공급의 득보다는 품귀피해를 더 보고 있다(한경, 1991.5.22).

2) 금융선물의 우선도입

(1) 정부관계기관

○ 한국증권거래소

설문조사 결과 주가지수선물을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자가 가장 많은 점은 학자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최우선 도입대상물에 대해서는 주가지수선물로 각계의 의견이 집약되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통화선물을 가장 먼저 도입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25.1%)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최근 환율관리방식 변경논의가 활발하여 환율변동폭의 확대예상에 따른 외환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된 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상품선물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16.2%)이 채권선물을 먼저 도입해야 한다는 비율(9.7%)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국내 농·축산물의 가격불안정이 지속되고 있어 가격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상품선물거래의 필요성이 반영된 데 비하여, 채권에 대해서는 유통시장이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채권투자에 대한 관심도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관별로는 증권기관(64.4%), 은행(42.9%), 보험회사(68.4%), 연금기관(50.0%), 언론기관(61.1%) 및 학계(66.7%)가 통화선물을, 선물거래협의회 회원사(37.1%) 및 경제단체(50.0%)가 상품선물을 가장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증권거래소, 「선물거래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1989. 8. 12~23)」, 선물시장, 1989. 12(제40호), 19면).

○ 서경봉(증권거래소 업무부장)

그 동안 학계와 업계 및 관계기관간에는 부분적이고 단속적이거나 선물 및 옵션시장의 국내설립필요성 및 절차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까지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해 보면 옵션거래보다는 투자자들의 이해가 용이한 선물거래를 먼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대상은 가장 성공가능성이 높은 주가지수로 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아직 일반상품의 선물이나 통화 및 금리의 선물은 대상물이 갖추어야 도입타당성이 낮거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반면, 주가지수선물은 주가의 변동폭이나 거래량, 예상수요 등의 기준에서 볼 때 이를 도입·시행하는데 따르는 장애요인이 거의 없다는 것이 주가지수를 선택한 이유이다(한경, 1989. 5. 11).

○ 이창복(한국은행 국제금융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금융선물거래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금융선물제도를 전면적으로 도입·실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의 국제화 추세에 맞추어 자본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는 현재의 우리 경제상황으로 볼 때 금융

선물거래제도의 도입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경제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우리경제의 여건과 현실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선물거래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여건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금융선물시장을 도입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1단계 : 현물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고 가격결정이 가장 자유로운 주가지수선물시장부터 개설한다.

2단계 : 주가지수선물시장을 통하여 선물거래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후 현물시장의 가격자유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경제적 의의가 큰 금리선물시장을 개설한다.

3단계 : 금리자유화 및 외환시장의 자유화가 성숙되어 금리 및 환율의 가격기능이 활성화되고 선진국형의 변동환율제로 이행되면 최종적으로 예금금리선물이나 통화선물을 도입한다(선물경제, 1991.9 제61호, 21면).

(2) 학계

○ 국 찬표(서강대 교수)

주요국들의 '선물거래 발전사를 보면 상품선물거래소가 먼저 설립되어 발달되었고 금융선물거래는 나중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그 성장속도는 금융선물거래가 월등히 빨라 이제는 양자가 거의 비슷한 수준의 거래실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와 같이 최근에 생긴 선물거래소는 바로 처음부터 금융선물거래를 시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역사적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상품선물보다는 금융선물을 먼저 시작하는 것이 선물시장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품선물의 경우에는 공급물량이 불충분하여 대상품목의 선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전근대적인 유통구조의 개선, 창고시설의 확보, 그리고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한 주요품목들에 대한 정부의 가격통제완화 등의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데 이에 상당한 기간이 요구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선물의 경우, 물론 금리선물이나 환율선물을 위하여는 금리나 환율이 자유화 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지만 이는 현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도입가능한 금융신상품 가운데 대상물의 현물시장규모, 가격변동폭, 거래조건의 표준화 정도, 현물시장의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우선 주식관련신상품의 도입타당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격변동에 대한 헤지수요와 주식시장의 효율화 및 자유화의 진전 등을 감안하면 주식관련상품의 도입여건은 통화나 채권신상품 등 여타의 신상

품에 비하여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생각된다(선물시장, 1986.9(창간호), 33~34면; 매경, 1991.1.10).

○ 손 천균(한국금융연수원 교수)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금융자본시장 및 외환시장이 성숙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므로 금융선물시장의 도입은 일시에 여러상품을 도입하려고 하기 보다 도입여건이 충분히 성숙된 상품부터 다음과 같이 단계적으로 도입함이 효율적일 것이다.

1단계 : 현물시장의 규모가 가장 크고 가격결정이 가장 자유로운 주가지수선물시장부터 개설

2단계 : 주가지수선물시장을 통하여 선물거래에 대한 경험을 축적한 후 현물시장의 가격 자유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고 경제적 의의가 큰 채권선물시장을 개설

3단계 : 금리자유화 및 외환시장의 자유화가 성숙되어 금리 및 환율의 가격기능이 활성화되고 선진국형의 변동환율제로 이행되면 최종적으로 예금금리선물이나 통화선물을 도입(선물경제, 1990.7(제47호), 22면).

○ 권 영준(한림대 교수)

최근 헤지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상으로는 상품선물과 금융선물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향후 십수년간은 효율적인 선물시장이 성립될 수 있을 만큼 현물시장이 발전된 곳은 금융시장을 제외하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상품의 경우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선물시장을 이용해야 할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아직 비효율적인 국내상품선물거래소를 설립할 필요는 없으며 얼마든지 해외상품선물거래소를 이용할 수 있다(1992.7.28 한국선물학회·매경주최 선물거래제 도입 정책토론회 토론내용, 선물경제, 1992.8(제72호), 42~45면; 매경, 1992.7.29).

○ 최 홍식 교수

국내 문제를 돌이켜 볼 때 현재로서 가능한 선물거래품목은 주가지수선물 밖에 없다. 상품선물의 경우 상장가능성은 농산물현물시장의 규모가 작고 유통시장이 가락동시장과 같은 수준의 원시적 단계라고 보고, 금융시장관계자들이 상품선물을 상대로 매점매석할 경우 시장붕괴 위험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선물 자체가 금융자산이므로 금융시장을 관리하는 부서가 감독해야 한다고 본다(1992.7.28 한국선물학회·매경주최 선물거래제 도입 정책토론회 토론내용, 선물경제, 1992.8(제72호), 48면; 매경, 1992.7.29).

(3) 업계 등

○ Leo Melamed(CME 회장)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채권(Bond) 선물거래가 첫 단계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다른 나라에서도 채권선물로부터 시작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이미 한국에서도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채권선물로부터 선물산업의 분위기를 확산하여 통화선물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원화는 엔화 등 다른 통화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효과적인 통화선물거래도입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체제에서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주가지수선물과 옵션의 순차적 도입이 필요하다(CME 회장 Leo Melamed 방한인터뷰, 선물경제, 1990. 5(제45호), 14면).

○ 대한상공회의소 - 상장기업의 환차손익조사

국내기업들은 환율변화에 따라 손익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환차손익을 피하기 위해 금융선물거래, 특히 통화선물거래가 조속히 도입되기를 희망하고 있다(한경, 1991. 10. 22).

제 2 편

최근입법의견 동향 및 최신법령 소개

I. 최근입법의견 동향

○ 분류기준표

분 야	대한민국헌행법령집해당항목
憲 政	제1권1헌법, 2국회, 제2권3선거·정당
統一·外交·國防	제14권13군사(1), 제15권13군사(2), 14병무, 15국가보훈, 제47권44외무, 45조약(1), 제48권45조약(2), 제49권45조약(3)
內 務·地方行政	제3권4행정일반, 제4권5국가공무원, 제10권10지방제도(1), 제11권10지방제도(2), 제12권11경찰, 제13권12민방위·소방
社 會·文化·教育	제16권16교육·학술(1), 제17권17교육·학술(2), 제18권17문화·공보, 제38권38사회복지, 제40권40노동(1), 제41권40노동(2)
產 業·經 濟	제20권19재정·경제일반(1), 제21권19재정·경제일반(2), 제22권20내국세(1), 제23권20내국세(2), 제24권21관세, 22담배·인삼, 제25권23통화·국책·금융, 제30권28상업·무역·공업, 제31권29공업규격·계량, 30공업소유권, 제32권31에너지이용·광업, 제33권32전기·가스
農 林·水 産	제26권24농업(1), 제27권24농업(2), 제28권25축산, 26산림, 제29권27수산
建 設	제34권33국토개발·도시, 제35권34주택·건축·도로, 제36권35수자원·토지·건설업
科學技術·交通·遞信	제19권18과학·기술, 제42권41육운·항공·관광(1), 제43권41육운·항공·관광(2), 제44권42해운(1), 제45권42해운(2), 제46권43체신
環 境·保 健	제37권36공중위생·의사, 제38권37약사, 제39권39환경
法 院·法 務	제5권6법원, 제6권7법무, 제7권8민사법(1), 제8권8민사법(2), 제9권9형사법

1. 최근입법의견 목록

(1992. 12. 16 ~ 1993. 3. 15)

◎ 憲 政 66

-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 국회법 개정의견
-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
- 민주질서보호법 제정의견
- 부정부패방지 특별법 제정의견
- 정당법 개정의견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統一 · 外交 · 國防 69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
-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의견
- 반민족행위자재산몰수에관한특별법 제정의견
-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안

◎ 內 務 · 地方行政 71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개정안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개정에 관한 의견
-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 정부업무인수인계에관한법률 제정의견
-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의견
- 행정정보공개법제정에 관한 의견
- 행정정보공개법시안

◎ 社會・文化・教育 74

- 고용보험법제정에 관한 의견
- 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 근로기준법 개정안
- 근로자의날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근로자파견법 제정의견
- 노동관련법개정에 관한 의견
- 노동쟁의조정법 관련 입법의견
- 눈썰매장설치관련 입법의견
- 사립학교법 개정의견
-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의견
- 청소년유해환경개선관련 입법의견
-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의견

◎ 産業・經濟 79

- 공업발전법 개정의견
- 관세법개정에 관한 입법의견
- 경제행정규제완화특별법 제정의견
- 금융기관규제완화 관련 입법의견
- 금융실명제실시관련 의견
- 기업경영환경개선을위한특별법 제정의견
-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의견
-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관리규정 개정의견(원산지 표시 강화)
- 독성화학물질의통제에관한법률 제정의견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입법의견
- 상속세법관련 의견
- 상품권법시행령 개정의견
-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소비자피해구제관련 입법의견
- 수출상품관련법 개정의견
- 외국인투자관련 입법의견
-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안
- 재벌해체관련 입법의견

- 전자금융이체법 제정의견
- 주식회사의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지적재산권보호관계법개정에 관한 의견
- 토지초과이득세관련 입법의견
- 특허법개정에 관한 의견

◎ 農 林 · 水 産 88

- 농지관리법 제정의견
- 농지기본법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양곡관리법과 동시행령 개정의견

◎ 建 設 89

- 건설업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건축법시행령 등 개정의견(상가교회 규제관련)
-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의견
- 재건축규제완화관련 입법의견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의견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토지관련법 개정의견
- 토지수용법시행령 개정안

◎ 科學技術 · 交通 · 遞信 92

- 교통사고처리법무사제도관련 입법의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의견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의견
 - 소화물일관운송 관련
 - 이사화물운송 관련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 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법률안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 環境・保健 95

- 공중위생법 개정의견
- 남극사업지원법제정에관한 의견
- 노천소각금지관련 입법의견
- 매장및묘지에관한법률 개정안
- 선박매연규제관련 입법의견
-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의견
- 시체해부보존에관한법률 개정의견(뇌사및장기이식 관련)
- 야생동식물보호협약가입관련 입법의견
-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 개정약사법시행규칙 관련 입법의견(93.3.5)
- 인공수정관련 입법의견
- 의료법 개정의견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의견
- 적출물등처리규칙 개정안관련 입법의견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法院・法務 101

- 가족법 개정의견
- 경찰수사권독립관련 입법의견
- 국가보안법폐지관련 입법의견
-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의견
- 도청방지관련 입법의견
- 변호사법 개정안
- 사법보좌관제도신설관련 입법의견
- 전과기록말소에관한법 제정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개정의견
- 행정법원 설치관련 입법의견
- 행형법 개정의견

2. 최근입법의견 요지

(1992. 12. 16 ~ 1993. 3. 15)

○ 憲 政

○ 공직자윤리법 개정의견

- 국회의원과 차관급이상 고위공직자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을 자진공개하도록 유도하고, 등록재산의 공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등록재산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방침임(민자당).
 - ① 재산등록공직자의 범위를 6급이상 공무원과 선거직 공직자 및 공직선거에 후보로 나선 자까지 확대함, ② 재산공개자의 범위를 2급이상 공무원과 선거직 공직자로 확대, 관보에 공개함(민주당).
 - 공직자가 등록 및 변동신고한 재산의 내용은 반드시 사정기관의 검증을 받도록 해야 하고, 허위신고시의 벌칙을 과하는 한편, 퇴직후의 유관기관 취업도 엄격히 규제하도록 법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경향 사설).
- : 국민 93.1.30.,1면; 동아 93.2.16.,9면; 국민 93.2.16.,2면; 경향 93.2.28.,3면

○ 국회법 개정의견

- ① 의장의 당적보유를 금지함. 단, 정당후보로 의원선거에 출마할 때는 의원입기만료 1백80일전부터 당적을 보유할 수 있음, ② 국회에 정보위원회를 신설, 안기부와 국가안전보장회의 소관사항을 관장케 하고 행정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소관사항을 포함한 임명동의안 처리에 앞서 소관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어 자질능력을 심사함(민주당).
- : 동아 93.2.16.,9면

○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의견

- 전국구의원이 소속정당을 탈당하거나 당직을 변경할 경우 의원직이 유지되는 현제도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제도로 바꾸는 것을 검토함.

① 철저한 선거공영제의 실시를 위하여 선거때 인원이나 조직의 동원비를 줄이고, 이를 위해 정당간 텔레비전 토론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② 선거구제에 대해서는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뽑는 대선지구제도를 신중히 검토.

③ 각종 선거법을 일원화하는 통합선거법 제정문제 등을 검토.

④ 각종 선거에서 옥내의 유세를 제한하고 선거운동원을 아예 두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민자당).

: 조선 92.12.29., 2면; 동아 93.3.5., 1면; 한국 93.3.6., 1면; 경향 93.3.6., 1면; 세계 93.3.6., 1면; 국민 93.3.6.,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38면) 참조

○ 민주질서보호법 제정의견

- 현행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군사기밀보호법 등으로는 대응하기 미흡한 순수안보침해사범에 대한 규제를 목적으로 함. 주용내용으로는 ① 북한을 영원한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반국가단체」규정과 「반국가단체구성죄」의 폐지, ② 적대국 뿐 아니라 다른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는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 ③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동조(제7조), 금품수수(제5조2항), 잠입탈출(제6조), 회합통신(제8조), 편의제공(제9조), 불고지(제10조)의 죄 폐지, ④ 보안법위반피의자를 일반형사피의자보다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구속기간연장조항 폐지, ⑤ 투표에 의한 정부선택과 의회제도, 사법권 독립 등 헌법에 명시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고 선동·선전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의 처벌, ⑥ 국가안보침해를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해 북한 등 적대국의 활동을 선전하는 행위의 처벌 등(민주당).

: 동아 93.2.16., 9면; 국민 93.2.16., 2면

○ 부정부패방지 특별법 제정의견

- 공직사회의 부패척결을 위해 ① 부정부패행위자 처벌형량의 대폭 강화, ② 부정행위자의 부정축재재산 몰수, ③ 공무원퇴직 후 관련업체 취업제한, ④ 부정부패고발자에 대한 포상 및 면책특혜 부여 등을 포함 한 「부정방지특별법」의 제정을 검토함(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세계 93.2.24., 2면

○ 정당법 개정의견

- 지금까지 지구당중심의 당운영때문에 엄청난 정치자금에 들었던 점을 감안, ① 정당의 운영경비는 당원의 당비와 후원회의 후원금으로 충당하는 한편, 국고보조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② 지구당 문제를 (i) 지구당 자체를 외국처럼 완전폐지하는 방안 (ii) 지구당을 상시조직이 아닌 선거때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iii) 지구당은 폐지하되 시·도지부는 존치시키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민자당).
- : 동아 93.3.5.,1면; 한겨레 93.3.6.,1면; 경향 93.3.6.,1면; 국민 93.3.6.,2면

○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 정치권의 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① 정치자금의 신고 의무화와 처벌규정의 도입, ② 현행 지구당운영관행의 획기적 개선, ③ 중앙당의 기구와 인원 축소, ④ 선거제도의 개선 등이 필요함(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 조선 93.1.28.,1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3~24면) 참조

○ 정치자금법 개정의견

- ① 음성정치자금 유입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일반국민의 소액기부금제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국고보조를 크게 늘려 선거공영제를 정착시킴.
- ② 음성정치자금 유입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 후원회의 회원수와 모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금을 현실화하며, 소액기부금제를 활성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민자당).
- : 동아 93.3.5.,1면; 경향 93.3.6.,1면; 국민 93.3.6.,2면
-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3~24면) 참조

○ 집회와시위에 관한법률 개정의견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학교 기타 공공기관이 집회 또는 시위주최자로부터 장소사용을 신청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목적에 우선해 그 사용을 허가해야 함.
- ② 집회금지통고는 그 대상을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 명백한 집회나 시위 등 법에 구체적으로 명문화된 경우에만 한

정함.

③ 부당한 금지통고에 대해서는 24시간내에 고등법원에 통고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신청하고, 고법이 48시간내에 취소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금지통고는 효력을 잃도록 함.

④ 집회 및 시위금지장소를 공공청사 경계지점 1백m 이내에서 10m 이내로 축소함(민주당).

: 동아 93.2.16., 9면

○ 統一 · 外交 · 國防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

-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한 예비역군인으로서 고엽제환자는 ① 국방부로부터 전역 및 질병사실 확인 통지를 받아, ② 국가보훈처에 등록신청을 하고, ③ 국가보훈처장은 보훈병원장의 검진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대상자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함(국가보훈처).

- 월남전 참전자 중 고엽제후유증으로 의심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고엽제후유증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무료로 진료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엽제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따라 보상하고 법 시행이전에 사망한 고엽제환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안』을 의결함(국무회의).

: 한겨레 93.1.16., 2면; 국민 93.1.16., 19면; 국민 93.2.4., 18면; 서울 93.2.5., 2면; 한겨레 93.2.5.,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26면) 참조

○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의견

- 대군사기밀이라고 의심되는 사항을 보도 방송할 경우 반드시 사전확인토록 했던 언론관련조항을 선언적 임의규정으로 완화하고, 비밀지정권자를 대대장급 이상에서 사단장급 이상으로 높여 비밀지정 남발 현상을 막고 국민의 알권리 침해를 예방토록 함(국방부).

: 한국 93.3.3.,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43면), 제3호(47면) 참조

○ 반민족행위자재산몰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견

- 이완용의 재산몰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이에 대한 특별법 제정 움직임도 구체화 되고 있음. 여야국회의원 16명도 「이완용후손재산환수저지모임」을 조직, 「반민족행위자재산몰수에 관한 특별법」 입법준비를 서두르고 있음.

① 친일매국노 이완용의 증손자가 매국의 대가로 차지한 땅을 찾으려고 소송을 제기, 온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으므로 「반민족행위자의 재산몰수특별법」을 제정, 민족정기를 바로잡아야 함(민주당 장영달의원).

② 소급입법금지조항으로 특별법 제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민특위나 3공때 「반국가행위자재산몰수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고 2차대전 이후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등이 역사적 죄악에 대해 소급입법을 한 사례가 있는바, 우리역사의 특수성과 헌법전문에 명시된 「3·1운동정신의 계승」,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승계」 조항을 근거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임(민주당 김원웅의원).

③ 국통을 바로 세우고 오욕의 역사를 바로 잡으며 후세에 교훈이 되고 권력자가 권력을 잘못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극일운동시민연합대표 황백현).

④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몰수특별법」 제정은 민족정기확립과 민족정서를 고려,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현승중국무총리).

: 세계 93.3.2., 8면; 동아 93.2.16., 4면; 중앙 93.2.16., 2면

○ 참전군인등지원에 관한 법률안

- 1992년 8월에 입법예고한 『창군및6·25참전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참전군인 중 중사이상(당시 이등상사)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기금의 수혜대상을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모든 군·경·민간인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1994년부터 지원자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참전군인등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함(국무회의).

: 국민 93.2.4., 1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46~47면) 참조

○ 內 務 · 地方行政

○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

- ① 장의업소를 포함해 예식장 등 가정의례업소에 대한 허가제를 없애고 고시제로 묶여 있는 요금도 자율화.
 - ② ‘가정의례법에 관한 법률’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고 애꿎은 전과자만 양산하는 등 부작용이 큰 7가지 허례허식 금지조항도 대부분 없애기로 했다. 폐지대상 금지조항은 (i)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ii) 기관·기업체·단체·직장명의로 신문부고 (iii) 화환·회분 등 장식물의 증여 및 진열 (iv) 답례품 증여 (v) 굴건제복 착용 (vi) 만장의 사용 (vii) 경조기간 중 주류 및 음식물 접대 등임(보건사회부).
 - ③ 청첩장등 인쇄물에 의한 하객초청, 답례품 증정행위 금지조항은 삭제하고, 화환 화분등 장식물 진열 사용 또는 명의를 표시한 증여, 경조기간중 주류 및 음식물의 접대행위는 방법과 한도를 정해 부분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관과 기업체, 사회단체 또는 직장명의로 신문부고, 굴건제복착용, 만장사용은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사회적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고 판단, 관련조항을 존치시킬 방침이다(민자당).
- : 동아 93.2.16., 23면; 한겨레 93.2.22., 14면; 조선 93.2.22., 22면; 세계 93.3.8., 23면; 서울 93.3.8., 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47~48면) 참조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개정에 관한 의견

- ① 현재 폭 10m이상 건물에 대해서 세로로 한줄만 설치하도록 한 건물벽면 돌출간판을 건물폭에 관계 없이 모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폭 10m이상 건물은 10m마다 한줄씩 더 설치하도록 하며, ② 4층이상 건물의 창문이 없는 측면에만 허용했던 간판을 창문이 있는 측면에도 창문을 가리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③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표시할 수 있던 출입문 유리광고물(일명 선팅)의 경우 신고 없이도 가능하게 하며, ④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던 옥상간판을 자기건물에 자기상호표시를 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광고물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내무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은 앞으로 교회당 및 임대교회의

건물옥상에 붉은색 전등으로 십자가를 밝힐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현정부가 4만여 한국교회의 종교시설과 집회장의 붉은 색으로 된 십자가 탑을 철거하려는 의도가 분명함(한국기독교임대교회총연합회).

: 한겨레 93.1.20., 14면; 국민 93.1.19., 17면; 서울 93.1.20., 21면; 조선 93.1.20., 22면; 국민 93.2.3., 10면

○ 외무공무원법 개정안

- ① 특임공관장의 임기연장 및 근무지 변경을 법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특임공관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해외근무지를 한곳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

② 특임공관장의 변칙적인 정년 연장을 제도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 특임공관장의 정년을 65세로 규정하는 조항도 명문화(외무부).

: 국민 93.3.8., 2면

○ 정부업무인수인계에 관한 법률 제정의견

- 대통령직인수위는 새정부출범 때마다 대통령령에 의해 정부업무인수인계를 추진하는 현행 제도가 불합리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정권 교체시 효율적인 정부업무인수인계를 위해 「정부업무인수인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건의(인수위).

: 서울 93.2.17., 2면

○ 지방의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안

- ① 지방의회는 감사나 조사를 위해 증인과 감정인의 출석·감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해야 함.

②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음. 단,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밀은 주무장관의 소명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음(민주당).

: 동아 93.2.16., 9면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의견

- 현행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는 교육행정분야의 일반사안에 대한 감사는 교육위원회가 실시해 그 결과를 시·도의회에 보고하고, 특정사안에 대해서만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이에

대해 교육행정기관의 행정사무 감사 및 교육비 특별회계결산·감사위원 선임권 등을 교육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게 지방자치법령을 개정해 주도록 내무부에 요청(교육부).

: 세계 93.2.22.22면; 한겨레 93.2.22., 1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50면) 참조

○ 행정정보공개법제정에 관한 의견

- 행정정보의 공개청구주체는 내국인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대상 정보는 행정기관이 직무상 작성·취득한 문서와 도면, 전산자료 등으로 제한하나 ① 국가안보 및 외교상비밀 ② 기업의 영업비밀 ③ 사생활 보호관련 정보 ④ 행정기관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정보 ⑤ 다른 법령에 의해 공개가 제한된 법령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방법은 청구자가 서면으로 신청하면 공개일시 및 장소를 지정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공개거부에 대한 불복절차로 행정심판제도나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활용하는 내용의 『행정정보공개법 제정방향』을 마련함(총무처).

: 조선 93.1.25.,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1~42면), 제2호(44면) 참조

○ 행정정보공개법시안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의무 및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정보공개법시안을 발표함. 그 요지는 ①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5조) ② 공공기관의 목록비치, 열람·복사제공 및 자료처리의 전산화 의무(§7조) ③ 비공개대상(§8조) ④ 정보공개청구의 방법(§10조), 공개의 결정(§11조), 열람 등의 절차 및 비공개결정에 대한 정보공개심판청구(§14조) ⑤ 정보공개위원회의 구성, 재결의 효력(§15조),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19조) ⑥ 의무적 정보공표(§23조) ⑦ 기타 벌칙 등임(총무처).

: 세계 93.3.11., 2면

○ 社會 · 文化 · 教育

○ 고용보험법제정에 관한 의견

- 10명이상 사업체의 경우 노사가 임금의 1%정도를 각출하여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95년부터 실업보험의 성격을 지닌 고용보험제를 실시하기 위한 『고용보험법』을 제정하여야 함(민자당 정책위원회).

: 한겨레 93.2.2., 2면

○ 교육법시행령 개정의견

- ① 현재 의무이수과목인 국어·국사·국민윤리·철학·체육·영어 등 교양과목이수학점을 대폭 줄이고 줄어든 교양과목도 공업·영어·컴퓨터·직업윤리 등 기술훈련과 관련 있는 과목으로 전부 대체키로 함.

② 내년부터 전문대학장이 학교·학과의 특성에 맞춰 교양과목의 이수비율등을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③ 교육부와 국립교육평가원은 새 대입제도가 특기자 특별전형을 지금까지의 예·체능 분야 외에 문학·어학·수학·과학 분야의 특수재능 보유자에까지 확대키로 함에 따라 특기자심사기준(제71조의 9)을 개정함. 이에 따라 특기자의 자격을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특수재능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고 관련수상경력의 유효연한도 고교 3학년으로 제한하지 않고 재학기간 3년중 어느 때의 경력이든 인정해 주는 등 융통성을 두며 대신 특기자의 선발여부나 사정기준 등은 대학 스스로 정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세부시행지침을 마련중임.

- '94학년도 시행을 목표로 경쟁률이 1대1정도로 선발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현행 인문계고교선발고사를 폐지하고 중학교 내신성적만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중.

- 지금까지 학교별로는 자체 출제·관리해온 외국어고, 과학고, 예술고 등 15개 특수목적고의 신입생선발을 교육청이 주관하는 공동출제·관리방식으로 바뀌 빠르면 94학년도부터 시행할 방침.

: 동아 93.2.18., 23면; 세계 93.2.19., 21면; 한국 93.2.18., 22면; 조선 93.3.1., 23면; 경향 93.3.2., 23면

○ 근로기준법 개정안

- ① 기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방안의 하나로 현재 둘로 나뉘어 있는

연·월차휴가를 하나로 묶어 휴가일수를 크게 줄이고 근로시간을 기업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형근로시간제를 도입키로 함.

② “사용자는 한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47조는 최근 근로시간의 단축추세에 따라 임금보전효과 이외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판단하에 연·월차 휴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휴가일수도 크게 줄이는 방향으로 관련조항을 개정.

③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일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수정하여 기업이 업무의 양과 사업의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형근로시간제 도입근거를 마련.

④ 여성근로자의 연장 및 야간근로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6조·57조 역시 생산공정상 운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이를 고쳐 여성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정부).

- 정부의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동조건을 악화시킬 것이 분명한 구시대적 악법”이라며 “반노동자적 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노총).

- “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근로조건은 어떤 명분이나 이유로도 현재의 수준보다 낮춰져서는 안된다”라고 정부개정안에 반대(전노협).

: 한겨레 93.3.9., 1면; 한겨레 93.3.10., 12면; 한겨레 93.3.10., 14면

○ 근로자의날에 관한 법률 개정의견

- 이미 예정된 노동관계법 개정작업과 관련, 「근로자의날에 관한 법률」도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을 통해 개정을 적극 검토할 계획(노동부).

- 90년부터 국회에 근로자의 날을 변경해줄 것을 청원하는 한편, 산하 조직에 5월 1일을 기념하도록 하고 3월 10일의 모든 행사에 참석을 거부해 왔음(노총).

: 세계 93.3.9., 23면

○ 근로자파견법 제정의견

- ① 3D기피현상으로 인한 제조업분야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전문기술지식을 가진 근로자를 다른 업체에 파견케 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추진키로 함.

② 현행법상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만이 할 수 있는 노동자 공급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인력공급업체 또는 기업에도 허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훈련의 시설·교재·장비기준도 완화하고 노동부에 대한 각종 보고·출석제도를 폐지하며 최저임금 적용시기를 1월에서 임금교섭이 끝나는 9월로 변경기로 함(노동부).

- 새로운 고용패턴의 확산에 따라 이 제도의 도입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나, 파견사업주와 사용자사업주가 달라 근로조건이 열악해질 가능성이 크고 사용자업체에서 이 제도를 악용해 정식직원채용을 꺼리고 파견근로자를 선호해 결과적으로 고용구조의 불안정만을 심화시키며 급여를 중간착취할 우려 등 여러가지 폐단이 있으므로, 이를 막기 위해 파견근로자의 고용시 노동조합과 사전에 반드시 협의하도록 명시하고 파견사업체와 사용자사업체간의 계약사항을 공개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노동계).

: 한국 93.3.14., 2면; 중앙 93.3.15., 21면

○ 노동관련법개정에 관한 의견

- 현행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을 대폭 개정하여 변형근로시간제 및 시간제근로제 도입과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금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배제 등을 법제화 할 방침임(노동부).
- 민간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함(노동계).
-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복수노조 허용, 무노동 무임금 원칙명시 등의 쟁점에 대해 93년 3월말까지 시안을 작성하여, 93년 내에 법을 개정해야 함(민자당).

: 한겨레 92.12.21., 10면; 한겨레 93.2.2., 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5면), 제2호(45면), 제5호(50면) 참조

○ 노동쟁의조정법 관련 입법의견

- ① 「사실상 노무직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노쟁법 제12조 2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오는 '95년 12월말을 시한으로 국회에서 해당법률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
- ② 지하철공사직원·통신공사직원·서울대병원직원 등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파업권이 인정되고 있음을 들어 「체신·철도·국립의료원의 노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이같은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라고 함.
- ③ 국회의 법개정 방안에 대해서는 체신부·철도청소속 현업기관과 국립의료원의 작업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기능직·고용직공무원에

게 단체행동권을 전면 허용하는 방안, 이들에게 단체행동권을 주되 행사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는 방안 및 국가안보·국민보건 등과 직결되지 않는 직종을 선정해 쟁의권을 주는 방안 등 세가지를 제시(헌법재판소).

- 3월 4일 한국정부에 대해 복수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공무원 및 교사의 단결권제한 및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폐지하라고 권고(국제노동기구).
- : 국민 93.3.11., 19면; 조선 93.3.12., 31면; 한국 93.3.12., 29면; 한겨레 93.3.12., 15면; 경향 93.3.12., 22면; 세계 93.3.12., 21면; 서울 93.3.12., 22면; 동아 93.3.12., 3면; 한겨레 93.3.13., 2면; 한국 93.3.15., 3면

○ 눈썰매장설치관련 입법의견

- 눈썰매장이 안전설비가 미흡하고, 급경사 지점에 충격흡수시설이 없는 등 사고위험성이 높지만,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안전관리에 미흡함(한국소비자보호원, 『눈썰매장 안전실태』).
- 눈썰매장 관련법규의 보완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해당 시·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을 요청할 것임(정태봉, 한국소비자보호원 안전1과장).
- : 국민 93.1.15., 12면; 서울 93.1.17., 12면

○ 사립학교법 개정의견

- 국교협, 사교련 및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협)는 15일 '입시부정·대학위기의 진단과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현행 사립학교법은 대학의 자율성이 아니라 재단법인의 자율성만 강화해 입시부정 등 부조리를 구조화하고 있다"며 이의 개정을 요구함(국교협, 사교련, 민교협).
- ① 민주당 관계자들도 재단과 학사운영을 분리하고 교수·교무회의를 의결기구화해 예·결산, 인사, 징계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족벌경영체제 방지를 위해 친·인척들의 재단·학사운영 참여를 엄격히 규제하는 쪽으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
- ② 우선 재단쪽이 학교의 장과 교직원의 임면권을 갖도록 한 현행법규정을 바꾸어 학교장이 교원인사권을 갖도록 하고 교수회의의나 교무회의 추천 등을 통해 구성되는 교직원인사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함.

③ 이사회구성에 있어서도 “각 이사 상호간에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그 정수의 5분의 2를 넘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부분도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했던 지난 '90년 법개정 이전 조항으로 되돌려야 함. 또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이나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던 조항도 되살려야 함.

④ 또한 “재단설립자나 설립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는 재단이 설치·운영하는 대학의 총·학장으로 취임할 수 없게 규정했던 조항도 원래대로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민주당).

: 한겨레 93.2.16., 14면

○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의견

- 행정기관이나 공공건물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등과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노력규정」을 행정적 강제규정으로 개정해야 함. 장애인전용 주차장의 위치, 표지물설치 등을 구체화하고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의 경사도나 전용화장실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세부규칙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함(한국지체장애아협회).

: 세계 93.2.23., 16면

○ 청소년유해환경개선관련 입법의견

- 청소년유해환경개선을 위해서는 ① 건전한 청소년 대상 영상매체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② 관련법규의 제정·개정 및 현실화, ③ 민간단체중심의 시청자운동 확산, ④ 새로운 영상환경에 맞는 교육 및 제도가 필요함(김기태 한국방송개발원 책임연구원, 한국청소년학회 주최 「청소년유해환경개선을 위한 토론회(1992.12.16)」).

: 서울 92.12.17., 16면

○ 학교보건법시행령 개정의견

- ① 현행 학교보건법시행령은 각급학교 교문으로부터 50m이내 구역을 절대정화구역으로,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백m이내 지역을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전자오락실 등 전자유기장·특수목욕탕 중 터키탕, 만화가게 등 3개업종만을 명시하고 있음.

② 학교보건법시행령을 고쳐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백m이내의 「학교정화구역」내 금지시설로 노래방·담배자판기·골프연습장 등 3개업종을 추가기로 함(교육부).

: 한겨레 93.1.6., 15면; 한겨레 93.1.19., 14면, 세계 93.2.22.22면; 한겨레 93.2.22., 14면; 서울 93.3.2., 23면

○ 産 業 · 經 濟

○ 공업발전법 개정의견

- 상공부장관이 '대기업집단의 업종전문화 유도지침'을 공고하고, 이 지침에 따라 각 그룹이 자율적으로 업종전문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면 공업발전심의회와 산업정책심의회가 심의하여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업발전법 개정시안』을 마련함(상공부).

: 한겨레 93.2.6., 2면

○ 관세법개정에 관한 입법의견

- 보복관세제도의 적용요건이 「수출품 및 그 수송수단에 대한 불리한 취급」으로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수출물품 및 그 수송수단에 대한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나 차별적 조치로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이 침해되는 경우」로 명확히 하며, 세부적으로 외국에서 ① 관세및 무역에관한일반협정 규정을 위반하거나 확대해석조치를 내릴 경우, ② 무역협정 등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철회하였을 경우, ③ 특정 국가를 일방적으로 제재할 경우, ④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치를 발동요건을 규정하고, 제재내역도 종전의 과세가격만큼 관세를 가산하는 것에서 피해상당액이하의 금액을 관세에 가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을 추진함(재무부).

- ① 세관이 수출입면허를 발급하여 보세창고를 떠난 물품이라도 불법수출입품에 대한 사후추적조사를 통해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게 하며, ② 수입품의 경우 원산지표시나 특정용도사용을 전제로 조건부수입면허를 부여하였을 때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물품원가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③ 보세구역 재반입명령제(리콜제도)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관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재무부).

: 서울 92.12.16., 2면; 서울 93.1.28.,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4면), 제4호(33~34면) 참조

○ 경제행정규제완화특별법 제정의견

- ① 경제개혁을 위해 각종 규제를 빠른 시일내 획기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법체제도 현행의 허용행위열거방식(포지티브 시스템)에서 제한행위열거방식(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함.
- ② 특별법의 범위는 제조업과 관련된 (i) 창업 및 공장입지, (ii) 법적 의무고용 완화, (iii) 보고의무 완화, (iv) 수출입 간소화의 4개 부문으로 축소시켜 입법화(민자당·상공부).
- 수많은 법을 사문화시키는 특별의 제정에는 우리가 따르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순리일 것임(경제기획원·건설부 등).

: 중앙 93.3.9., 7면

○ 금융기관규제완화 관련 입법의견

-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작년말 상당부분이 개선 내지 완화되었으나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과 금융시장의 개방화·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자율화의 확대를 통해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금융산업개편에 따른 업무영역조정이나 금융정책상 불가피한 것을 제외한 금융기관규제 완화조치는 가급적 앞당겨 상반기중 시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재무부).

: 동아 93.3.4., 7면

○ 금융실명제실시관련 의견

- 탈세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써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하며,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① 탈세와 불법적인 고리폭리를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의무와 책임이고, ② 실보다 득이 훨씬 더 크며, ③ 대다수 국민이 원하고 또 약속을 하였기 때문이고, 금융실명제에 조건이 붙고, 시기를 놓치면 실시가 어려워지고 대통령의 5년 임기 동안에 형식적인 실시가 그칠 수 있음(곽상경, 고려대 교수).

: 서울 93.2.5., 4면

○ 기업경영환경개선을위한특별법 제정의견

- 창업절차 간소화, 공장부지 마련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 완화, 수

출입절차 간소화, 의무고용비율 조정,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각종 문서의 대폭 축소를 주요골자로 한 특별법을 만들어 기업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할 계획(정부·여당).

: 서울 93.3.3., 9면

○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의견

- 현행 산업피해구조제도가 조사신청으로부터 구제결정까지 8개월이 걸려 농수산물의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부패하기 쉽고 계절상품인 농수산물의 산업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앞으로 피해조사 신청후 30일안에 수입수량제한이나 긴급관세부과 등의 잠정조치판정을 하고 관계부처에 구제를 건의하면 15일안에 구제조치시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시행령』의 개정을 추진함(상공부 무역위원회).

: 한겨레 92.12.16.,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0면) 참조

○ 대외무역법시행령 및 관리규정 개정의견(원산지 표시 강화)

- 국내유통단계에서의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를 강화해 오는 7월부터 실시할 방침.

① 과거 원산지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하는 것으로 애매하게 규정했던 것을 「일반포장물의 경우 상표나 회사이름이 적힌 포장앞면에 가로, 세로 각각 1.2cm이상의 크기로 바탕색과 대조되는 색으로 부착」하도록 의무화하고, 농수산물 등 포장없이 판매하는 수입품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시하는 뜻말을 게시토록 할 예정.

② 수입통관된뒤 분할재포장되거나 수입물품을 원료로 가공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을 신설하여 공산품의 경우 가공도나 국내에서의 부가가치창출비중에 따라 국산품판정여부를 정할 방침.

③ 원산지의 확인판정여부는 무역위원회가 말고 국내유통단계의 수입품에 대한 행정지도는 품목관련 행정기관이 발도록 할 방침.

④ 원산지 허위표시 물품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 침해물품도 세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설정하고 7월부터 철저히 단속할 방침.

⑤ 불공정 수출입행위의 유형을 구체화해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물품은 물론 혼동 또는 오인할 수 있게 표시한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수출입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품질 등을 허위 또는 과장 표시하는 행위 등도 모두 불공정수출입행위의 범주에 포함.

⑥ 불공정 수출입행위를 한 경우 시정권고, 무역업등록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되, 과징금 부과액은 (i) 지적재산권 침해의 경우 현행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이하로 (ii)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7백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올리고 (iii) 기타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상공부).

: 동아 93.2.22., 7면; 한겨레 93.2.23., 7면; 세계 93.2.23., 6면; 서울 93.2.23., 9면; 한겨레 93.3.11., 7면; 경향 93.3.11., 7면

○ 독성화학물질의통제에관한법률 제정의견

- 화학무기금지협약으로 화학무기원료물질의 생산과 수출입, 유통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강화될 것에 대비하여 국방부·외무부·환경처 등과 협의를 거쳐 올 상반기중 법률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후 내년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해 협약발효시점인 95년부터 시행키로 함(상공부).

: 서울 93.3.8., 2면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입법의견

- ① 1993년 4월 1일부터 1996년 3월말까지 채무보증규모를 자기자본의 200%수준으로 줄여야 하는 기업집단의 범위를 자산총액기준 30대재벌 그룹으로 하며, ② 채무보증규제의 예외인정범위를 해외건설·플랜트·선박수출에 따른 입찰·계약이행·선수금환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인 비차입성 보증이나 해외상품수출을 위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지원받은 제작금융에 대한 보증만으로 한정하고, ③ 출자규제대상도 현행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인 기업집단에서 계열회사 자산총액합계액의 순위에 의한 30대그룹으로 축소하여 집중관리하는 한편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정기준도 최근 1년간 국내총공급액 3백억원이상에서 500억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며, ④ 상호지급보증규제관련 금융기관을 은행, 단자, 보험, 증권, 종금 등 법률에 명시된 기관 외에 상호신용금고,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리스회사 등을 추가하고, ⑤ 출자규제의 예외인정을 현행 산업

합리화관련출자, 유·무상증자, 담보권실행 또는 대물변제에 의한 주식취득에 국한하던 것을 부품중소기업에 10%이내에서 출자한 경우, 주요기술의 공동개발·도입을 위해 출자할 경우, 도로·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해 설립된 회사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며, ⑥ 기업결합규제를 위해 주식취득, 임원점임, 합병, 영업양수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대상기업의 범위도 현행 납입자본금 10억원, 총자산액 50억원이상인 회사에서 납입자본금 50억원, 총자산액 200억원이상인 회사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함(공정거래위원회).

- 그밖에 ⑦ 30대 재벌그룹 및 독과점대기업 등에 대해 매년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많이 적발되는 기업이나 그룹에 대해서는 거래전반을 종합적으로 중점 조사하는 제도를 도입키로 함. ⑧ 하도급거래질서에 대한 단속 및 지도활동을 종래의 건설업 위주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위반업체에 대하여 현재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하도급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할 방침(공정거래위원회).

- 이미 입법예고 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중 ① 상호신용금고와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용카드회사 등은 상호지급보증규제대상 금융기관에서 제외시키고, ② 기술개발자금에 대한 보증이나 무신용장방식에 의한 수출어음할인보증, 유보금환급보증 등 비차입성보증에도 상호지급보증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일부수정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공정거래위원회, 경제장관회의)

- 재벌의 경제적 집중억제를 위해서는 앞으로 상호지급보증규제와 출자제한을 좀 더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재벌의 독과점과 소유집중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어야 함(이규억,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원).

: 조선 92.12.30., 7면; 국민 92.12.30., 6면; 한겨레 92.12.30., 1면; 동아 92.12.30., 7면; 한겨레 92.12.30., 3면; 서울 92.12.30., 2면; 국민 93.2.6., 6면; 조선 93.2.6., 11면; 동아 93.2.6., 6면; 세계 93.3.13. 7면

※ 「국내입법 의견조사」 제1호(47~48면), 제2호(47면), 제3호(61~63면), 제5호(52면) 참조

○ 상속세법관련 의견

- 상속세·증여세 등을 자진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세무서가 상속재산을

상속당시가액이 아닌 과세당시가액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도록 한 구상속세법 9조2항은 과세관청의 의사에 따라 세금을 결정함으로써 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위배됨으로 위헌임(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 한겨레 92.12.25., 1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3~64면) 참조

○ 상품권법시행령 개정의견

-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현재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는 구두·의류·주류 등에 대한 상품권의 발행을 허용하기로 하되, 우선은 금액표시상품권 2만원, 물품 및 용역표시상품권 5만원의 발행가액 제한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상품구입 잔액이 일정 비율 이상일 때는 잔액을 의무적으로 환불하도록 하고 규정 위반에 따른 처벌도 대폭 강화하기로 할 방침(재무부).

: 한겨레 93.3.12., 6면; 국민 93.3.12., 6면; 동아 93.3.12., 7면

○ 소득세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명예퇴직제도를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끼워넣어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받는 위로금의 경우는 감량경영 등의 회사사정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관행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회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면 퇴직금으로 처리할 수 없고 일반퇴직금의 공제비율(50%)보다 훨씬 높은 75%를 과표로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시비가 일어날 소지가 많음(해설).

: 경향 93.2.19., 9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3면) 참조

○ 소비자피해구제관련 입법의견

- 현재 금융·의료·법률서비스 분야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돼 은행법·의료법등에 의해 설치된 해당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소비자의 이용과 성과가 매우 저조한만큼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들 분야를 소비원의 피해구제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

그밖에 제조물책임법 제정, 집단소송법 제정, 피해보상기구 설치,

피해구제기금제도 도입 등을 주장(한국소비자보호원).

: 국민 93.2.17., 1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8면), 제3호(60~61면), 제4호(32~33면)
참조

○ 수출상품관련법 개정의견

- 수출상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수출검사를 받은 상품에 클레임이 제기된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검사보증제도를 도입하며, 취약수출품목에 대해서는 담당관제를 운용하는 등 기술제도를 강화하고, 공업표준화법, 공산품품질관리법, 계량법 등 품질관련 3개법을 각각 『산업표준화법』, 『품질경영촉진법』, 『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 등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할 계획임(신국환, 공업진흥청장).

: 한겨레 92.12.16., 7면

○ 외국인투자관련 입법의견

- 정부관계부처에 제출할 자료작성에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관료주의와 관련된 업무가 과중하며, 허가와 규제에 관련된 정책이 무원칙적이고 명료하지 못해 장기투자계획 수립이 어려움(더글러스 그레이, 주한 영국대사관 상무담당 서기관)
- 특히 2중과세나 이전가격 문제와 관련된 행정처리가 불명료한 부분이 많은데, 발표되지 않은 규정이나 내규에 의한 행정처리는 투자자들에게 추가적인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같은 제품의 이전가격을 결정하는데도 서로 다른 내용의 3~4개 규정을 적용하기도 함으로써 한국이 투자대상국으로서의 좋은 인식을 갖게 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임(쥐뒤프레센, 주한 프랑스대사관 상무관).
-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려면 외국인투자허가관련 법규 중 모호하거나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명료화하고, 정책과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법률이 아닌 정부의 비공개적 행정지침에 의해 규제하는 관행도 조속히 시정하여야 함(김남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 외국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재무부가 총괄하고 있는 외국인투자 관련업무 중 재무부는 제도개선업무만 취급하고 사업의 인가·관리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넘기도록 관련법규개정을 추진함(재무부).

: 조선 93.1.13., 6면; 서울 93.1.14., 9면

○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안

- ① 중소기업지정계열화업종 및 중소기업고유업종, 외국인투자비율 50%초과 제조업 및 서비스업, 개별법에 의한 지분제한업종, 도매업 등은 앞으로 신고만으로 외국인투자를 가능하게 하고 ② 외국인투자 절차도 간소화하여 외국인투자 신고수리기간을 30일이내에서 20일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경우를 외국인투자비율이 50%미만인 경우로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투자인가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심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6개에서 2개로 축소하며 ③ 다른 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신고만으로 출자가 가능토록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외국인투자비율 20%미만 기업에서 50%미만으로 확대하고 ④ 현재 제조업에 한정돼 있는 외자도입법상 조세감면대상사업에 첨단서비스업을 포함시키고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외에 운영자금만을 투입하는 경우에도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하며 ⑤ 외국인투자신고의 한국은행 위탁범위를 현재 외국인투자비율 50%미만의 제조업에서 투자금액 3백만달러미만 제조업, 투자금액 백만달러미만 비제조업, 외국인투자비율 50%미만 사업으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외자도입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재무부).

: 국민 92.12.26., 6면; 동아 92.12.26., 7면; 조선 92.12.27., 7면

○ 재벌해체관련 입법의견

- 인위적 재벌해체는 부작용이 큼(유창순, 전경련 회장).
- 법개정이나 강제적 방법에 의한 재벌해체는 큰 파문을 일으킬 것임(최경현, 선경그룹 회장)
- 재벌의 소유가 특정개인이나 가족에게 집중된 현황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로 경영자원이 분산되고 조직이 비대화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면할 수 없음(이경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겨레 93.1.16., 6면

○ 전자금융이체법 제정의견

- ① 컴퓨터의 조작을 통한 금융기관의 불법입·출금 등 컴퓨터 해커에 의한 범죄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전자금융관계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퍼스널 컴퓨터통신가입자번호 관리강화지침을 마련

키로 함.

② 현재 전자거래를 포함한 은행의 금융거래에 대한 기본법인 상법은 전표와 장부 등 문서에 의한 기록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거래에 의한 계약 등에도 효력을 규정하는 법이 필요함(재무부).

: 중앙 93.2.18., 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49면) 참조

○ 주식회사의외감사에 관한법률 개정의견

- 부실감사와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서는 회계사에 대한 징계강화만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분식회계를 한 기업주에 대해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외감법을 개정토록 요청할 방침(증권감독원).

: 서울 93.2.24., 10면

○ 지적재산권보호관계법개정에 관한 의견

- 저작권법 위반시의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재범이상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저작권보호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의 개정을 검토함(문화부).

- 『종합유선방송법』에 대한 선진국측의 불만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되 미국측이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CA-TV에 대한 외국인투자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방송내용에 있어서도 외국인 프로그램을 30%이상 방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규의 완화를 검토함(공보처).

- 현재 입법예고 중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조기에 개정하여 불법복제물에 대한 단속근거를 마련하기로 함(과학기술처).

: 서울 93.1.29., 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44면) 참조

○ 토지초과이득세관련 입법의견

- 정부가 하는 일이고 또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합리성이 있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따라야 하는데, 토초세의 경우는 이 두가지가 모두 결여되어 있으며, 미실현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납세자에게 박탈감을 줌으로써 담세자가 승복할 수 없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유희지나 종합토지세, 양도소득세 등을 강화하고 토초세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함(국민사설).

: 국민 93.1.16., 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52면) 참조

○ 특허법개정에 관한 의견

- 특허등록이전에 일반인이 이의신청을 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출원심사 처리기간을 지연시키고 있으므로, 이의신청시기를 등록이전에서 등록 이후 6개월 안으로 변경시키고, 이의신청시기의 변경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 부실권리의 남용을 막기 위해 이의신청기간동안에는 임시 보호권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특허법』개정을 추진함(특허청).

: 서울 93.2.5., 15면

○ 農 林 · 水 産

○ 농지관리법 제정의견

- 농지를 구입하려면 6개월이상 해당 시·군·읍·면에 거주해야 하는 현행규정을 개정하여, 농사를 지을 의도가 분명하면 현지거주사실이 없더라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와 같은 농지거래법규 완화조치가 땅투기 기회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이 지나도 농사를 짓지 않을 경우에는 농지를 재매각 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규정을 포함하는 『농지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함(농림수산부).

: 조선 93.1.2.,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51면), 제3호(65~66면) 참조

○ 농지기본법제정에 관한 입법의견

- 자경농민에 대해서는 농지소유상한을 현행 3ha에서 20ha로 확대하고 농지관련법규를 통폐합하여 『농지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함(정부).

: 한겨레 92.12.29.,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65~66면) 참조

○ 양곡관리법과 동시행령 개정의견

- 쌀의 재고량 증가로 쌀소비를 촉진하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현재 쌀소비억제책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는 음식

정의 혼식의무를 올상반기안에 삭제키로 함(농림수산부).

: 서울 93.3.14., 8면

○ 建 設

○ 건설업법시행규칙 개정의견

- 국내 건설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부실시공과 그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우수건설업자로 지정되는 경우 최근 2년간 평균 공사실적의 5%를 도급한도액에 추가하며, ② 하자발생이나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업체는 도급한도액의 1%에 영업정지기간의 개월수를 곱한 금액을 도급한도액에서 삭제하며, ③ 재해율이 건설업종재해율의 2배이상이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에 의한 협조요청이 있는 건설업체에는 최근 2년간 공사실적 연평균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급한도액에서 삭제하고, ④ 건설기술자의 이중취업을 엄격히 규제하기 위해 건설업면허 신청·갱신과 건설공사실적신고서를 제출할 때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을 마련함(건설부).

: 한겨레 92.12.16., 7면; 조선 92.12.16., 7면

○ 건축법시행령 등 개정의견(상가교회 규제관련)

-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입주를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해 자유롭게 허용하면서 교회를 포함한 일부 업종에만 용도변경이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령과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의해 종교집회장은 3백㎡미만으로 바닥면적 사용평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제한없이 허가해 주도록 시행령 개정 청원(한국기독교 임대교회총연합회).

: 국민 93.3.9., 10면

○ 공동주택관리령 개정의견

- 20가구미만의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단지외 1백가구미만으로 주택지분이 50%미만인 주상복합건물도 주택건설촉진법의 공동주택관리령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하며, 수선충당금적립이나 안전점검실시 등 공동주택관리의 필요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추진함(건설부).

: 조선 93.1.14., 7면

○ 재건축규제완화관련 입법의견

- 서울 주변아파트 등 집단거주건물의 안전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붕괴위험판정이 내려진 건물에 대해서는 준공후 20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관할구청의 허가만으로 새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재건축규제완화방안을 마련하여 관련법규개정을 추진함(민자당).

: 국민 93.1.8., 1면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

- 전용면적 135㎡(40.8평)초과의 경우 서울 70㎡, 직할시 75㎡, 시와 수도권내 읍면 85㎡, 기타지역 100㎡당 1대의 주차시설을 갖추도록 기준면적을 대폭축소하고, 중소형아파트단지의 자동차 한대당 주차장 시설 기준면적을 현행보다 15~30㎡씩 축소하며, 주택자재생산업체의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동아 92.12.24., 22면; 조선 92.12.24., 7면; 서울 92.12.25., 21면

○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의견

- 간선시설의 설치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아파트단지 입구까지의 도로건설비용은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상하수도·전기가스는 각 기구의 계량기까지 지방자치단체, 한전, 도시가스가 각각 시설하도록 의무화하고, 민영아파트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건설비용을 80%이하로 상향조정하며, 주택조합을 설립한 후에는 조합원의 추가가입을 불허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공동주택의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간선시설을 각 세대의 계량기까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려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하여 단지의 경계선까지만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도록 한 현행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함(건설부).

: 동아 92.12.28., 7면; 동아 93.2.5.,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35면) 참조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① 택지취득후 2년내에 건축을 착공하면 택지를 이용·개발한 것으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하여 주도록 되어있으나, 착공만 하고 방치하여 두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 예정기간에 준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며, ② 주택임대업자의 택지이용·개발의무기간을 현행 택지취득 후 2년 이내에서 택지취득후 3년이내로 조정하고, ③ 임대주택사업자가 이미 건축전에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거나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용택지를 증여받는 경우에 택지소유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④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해제된 날로부터 2년동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며, 조세감면규제법상 산업합리화조치로 출자받은 택지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면제하고, ⑤ 학교·교회 등 비영리법인에 대한 25.7평의 사택면적제한을 폐지하고,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관련법률이 규정한 최소기준면적의 1.1배 이내에 해당하는 택지에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함(건설부).

: 조선 92.12.31., 7면; 서울 92.12.31., 9면; 한겨레 92.12.31., 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55면) 참조

○ 토지관련법 개정의견

- 현행 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지나치게 규제일변도이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용지난을 야기시키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하며, 86개의 토지관련법 중 토지이용과 직접관계가 있는 국토건설종합법 등 30개 법률은 『국토기본법』, 『택지및주택건설법』, 『하천및공유수면법』, 『산지관리법』, 『농지관리법』, 『산업입지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도로관리법』, 『도시관리법』 등으로 단순화하고 나머지 56개 법률은 8개 통합법률에서 규정하고 인·허가 및 용도지역 등에 관한 규정을 원용하여 통합법률로 대체하며,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은 재정비해 공장에 관한 단일법이 되도록 할 계획임(정부);

: 국민 93.1.22., 1면

○ 토지수용법시행령 개정안

- 토지수용법상 토지채권발행대상을 현행 1억원 초과금액에서 3천만원 초과금액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토지수용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함

(건설부).

: 국민 93.1.19., 6면; 서울 93.1.20., 2면; 한겨레 93.1.22., 7면; 동아 93.1.22., 7면

○ 科學技術 · 交通 · 遞信

○ 교통사고처리법무사제도관련 입법의견

- 교통사고처리의 경험이 풍부한 전직 경찰과 손해사정인, 손해보험회사직원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교통사고처리법무사자격을 부여하여 교통사고발생시 경찰의 조사를 감시하고 보험처리 등 관련업무를 대행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법무사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법규개정을 관련기관과 협의함(경찰청).

: 한겨레 93.1.7., 14면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의견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도 사망·도주·음주운전·신호위반 등 8대 중대법규 위반사고외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규정을 개정하여 인도 돌진사고·개문발차·도로은행건설기계 등의 사고도 형사처벌하도록 추진함(정부).

: 국민 93.2.5., 18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37면) 참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①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재 서울·부산 등 6대 도시와 전주·울산·마산·청주·포항 등 11개 도시에만 부과하고 있는 것을 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안산·창원 등 인구 30만명 이상 7개도시를 추가해 모두 18개 도시지역에 적용하도록 하며, ② 교통유발부담금 액수를 현재 평당 1천원에서 1㎡당 3백50원으로 15.5%를 인상하고, ③ 교통영향평가제를 대폭 강화해 평가대상에 주차시설, 운동경기장, 방송국, 기차역, 연립주택 등을 추가하고 교통영향평가의 효력을 2년으로 한정하는 한편 사업시행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 결과를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하며, ④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현

재 인구 30만명이상 도시에서 인구 10만명이상 도시 및 그 교통권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전국의 43개 도시가 반드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함(교통부).

: 한겨레 92.12.24., 14면; 국민 92.12.24., 17면; 동아 92.12.24., 6면; 조선 92.12.24., 22면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의견

- ① 사고가 많은 운수업체에 대한 처분기준을 강화하여, 기준을 넘었을 경우 영업정지·면허취소 등 이익처분을 제한하고 불법택시운전사 적발시 자격을 취소하도록 함.

② 택시의 부당요금 징수, 승차거부, 합승 등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10만원에서 1백50만원으로, 시내버스에 대한 과징금은 노선위반행의 경우 90만원에서 1백50만원·결행시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국무회의).

: 국민 93.2.5., 18면; 조선 93.2.19., 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5호(56~57면) 참조

소화물일관운송 관련

- ① 소화물일관운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소비자보호를 위해서 현행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꾸어 업체간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② 현행 법규상 소화물일관운송의 사업범위가 각 운송업자가 면허받은 노선 또는 구역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운송서비스가 필요하고, ③ 일정수량이상을 운송할 경우에 수량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운임부담을 경감시켜야 함(한국소비자보호원 『화물운송서비스와 소비자 보호』).

: 국민 93.2.3., 12면

이사화물운송 관련

- 이사화물운송은 일반화물과 성격이 다르나 『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는 별도의 화물운송업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알선업자도 대부분이 규모가 영세하고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차량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전문작업인의 고용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① 직영차량과 전문작업원을 고용한 전문이사화물업체가 육성될 수 있도록

특 이사화물업을 운송사업의 독립된 업종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② 지입차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시장참여방법을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꾸고, 등록제의 조기시행이 어려울 경우 이사화물운송업체에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주는 것도 실효성 있는 방법이고, ③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해서 이사화물운송의 성격에 맞는 책임보험을 개발하고, 이 보험에 이사화물운송업체의 가입을 의무화하여야 함(한국소비자보호원 『화물운송서비스와 소비자보호』).

: 국민 93.2.3., 12면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

- ① 택시운송의 사업구역을 필요한 경우 인접 시·도와 통합할 수 있도록 하며, ② 부당요금수수, 승차거부, 합승행위 등에 대한 운행정치처분 기준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강화하고, 외국인에 대하여 이러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로 택시운전자격정지 30일, 2차는 운전자격취소처분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함(교통부).

: 국민 93.1.15., 17면; 동아 93.1.15., 21면

○ 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법률안

- ①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 신규·이전·변경등록을 할 때 그 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하는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② 차고지의 범위, 요건 등과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할 자동차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③ 차고지의 이전 또는 사용변경계약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 자동차보유자 및 차고지관리자는 차고지변경신고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특별히 허가된 곳을 제외하고는 도로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④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자동차와 중기관리법에 의한 대여업종중기는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법률안』을 마련함(교통부).

: 한겨레 92.12.31., 14면; 동아 93.1.1., 22면; 국민 93.1.1., 14면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 ①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현행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액을 상향조정하고 ② 불법복제프로그램인 것을 알면서 업무상사용하는 행위도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프로그램저작자의 권리에 대여권을 포함시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대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③ 단순행정심의기구인 「프로그램심의위원회」를 분쟁에 대해 사전조정하고 감정기관도 추천할 수 있는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로 개편하고, ④ 컴퓨터 바이러스를 불법제작 또는 배포하는 사람도 침해행위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함(과기처).

: 서울 93.1.6., 21면; 한겨레 93.1.15., 15면; 국민 93.1.15., 17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5면), 제5호(56면) 참조

○ 環 境 · 保 健

○ 공중위생법 개정의견

- ① 유흥주점·여관·음식점·사우나 등 공중위생업소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는 별도로 부당이익금을 환수하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할 방침.
 - ② 현재 고등기술학교 졸업자에게 교부하는 미용사면허를 올해부터 배출되는 전문대 미용학과 졸업자에게도 교부할 방침
 - ③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에 계류중인 업자가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해 업소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영업자의 위반행위가 업소 승계자에게 이전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할 계획(보사부).
- : 국민 93.3.9., 10면

○ 남극사업지원법제정에 관한 의견

- 남극의 세종기지가 위치한 킹조지섬은 남극대륙과 가깝기는 하지만, 기후 등 여러점에서 남극대륙과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위해서는 남극대륙에 제2의 기지를 건설하여야 하며, 남극사업에 필요한 조직·인원·예산의 체계적 지원과 관리를 위해서 외국처럼 『남극사업지원법』을 제정하여야 함(조홍섭, 한겨레신문 기자).
- 오존층파괴연구 등 본격적인 남극 연구를 위해서는 남극대륙에 새로운 기지를 세우고 쇄빙선을 도입하는 등 미래를 내다본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함(최문영, 한국해양연구소 극지연구센터).

: 한겨레 93.1.19., 8면

○ 노천소각금지관련 입법의견

- 다른 오염원과 달리 노천소각은 규제수단이 전혀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으므로 강력한 법규로 노천소각을 금지하는 등 「쓰레기를 태워서 없앤다」는 인식을 과감히 수정하여야 함(김동술, 경희대 환경학과 교수).

: 조선 93.1.29., 2면

○ 매장및묘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

- ① 지금까지는 공공사업 예정지역내의 분묘에 한하여 시장·군수가 일정기간 공고를 한 후 개장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전국의 묘지 현황을 일제조사하여 묘적부를 작성하고, 전국의 모든 무연고 분묘를 개장·화장한 뒤 납골당에 안치할 수 있도록 함.

② 묘적부에 등재되었더라도 안장한지 15년이상 지난 분묘중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분묘는 인근주민들의 진술 등을 참조해 일정기간 공고를 한후 단계적으로 개장할 방침.

③ 현재 24평이하로 되어있는 개인묘지 면적을 4평이나 6평이하로 크게 줄일 방침임. 이를 위반할 경우 현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던 처벌규정도 대폭강화할 예정(보사부).

: 한국 93.2.21., 23면

○ 선박매연규제관련 입법의견

- 선박용연료는 현행 『환경보전법』이나 『해양오염방지법』등 환경관련법 규상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서 일반 상업·공업용 벙커 C유나 자동차용경유보다 저질인 유류를 사용함으로써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음(최재용, 조선일보 기자).

- 선진국에서는 연료절감형 엔진의 개발단계를 넘어 환경보전차원에서 배기가스 중 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을 연구하고 있으며, 그 동안 육상교통수단에만 치중해 온 대기오염 방지대책을 선박에까지 확대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박성택, 해운항만청 검사계장).

: 조선 93.2.5., 2면

○ 소음·진동규제법 개정의견

- ① 소음규제대상을 확대하여 공장뿐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 시설을 설치한 모든 사업장을 포함시키고, 주거지역·학교·병원주변 등 조용한 환경이 필요한 곳을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 이 지역안에서는 소음배출시설허가제를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신고제로 변경하기로 함(환경처).

② 도로·철도변 등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시설이 대부분 부실시공으로 소음방지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방음벽의 재질, 높이, 길이, 형태 등 소음방지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조 및 설치기준을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관계법규에 반영하기로 함(환경처).

: 국민 92.12.26., 17면; 한겨레 93.1.9., 1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5면) 참조

○ 시체해부보존에관한법률 개정의견(뇌사및장기이식 관련)

- 장기이식이 가능한 사망자의 범위에 뇌사자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현행 '시체해부보존에관한법률'을 '장기이식및시체해부보존에관한법률'로 전면개정할 방침.

① '장기이식 정보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장기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할 계획.

② 뇌사의 판정은 의협기준에 따라 일정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의협의 심사와 인준을 받은 의료기관에서만 하도록 하고, 뇌사판정사례에 대한 점검내용 역시 협회에 사후보고하여 확인받도록 하는 한편, 뇌사사의 장기이식을 원하는 의료기관도 의협에서 제정한 요건에 따라 인력과 시설을 심사해 인준받도록 할 방침(보사부).

- "뇌사 인정이 심장사를 통설로 하고 있는 민법, 형법 등 현행법 체계와 상충하고 생명경시 풍조와 장기불법거래가 야기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법조·종교계 일부).

- 뇌사를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 장기이식은 도덕적으로 온당한가?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사회통념을 기초로 논의해야 하며,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법제화되는게 타당한 순서일 것임(세계일보 칼럼).

: 동아 93.3.4., 2면; 동아 93.3.5., 4면; 한국 93.3.5., 22면; 서울 93.3.5., 22면; 경향 93.3.6., 3면; 세계 93.3.6., 1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73면) 참조

○ 야생동식물보호협약가입관련 입법의견

- 멸종위기에 놓인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야생동식물보호협약 (CITES)』에 1993년 중 가입한다는 방침에 따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코뿔소 등 정력제 및 강장제로 알려진 야생동물의 불법거래를 강력히 단속하기도 함(지구환경대채실무회의).

: 조선 92.12.22., 11면; 동아 92.12.22., 22

○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

- ① 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의약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 현재 1차 자격정지 3개월,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자격정지 6개월로 되어 있는 행정처분을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3차 영업정지 3개월, 4차 자격정지 3개월로 완화조정하고, ② 약사가 아닌 종업원 등이 조제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현재 1차 자격정지 6개월, 2차 자격정지 12개월, 3차 면허취소에서 1차 영업정지 15일, 2차 자격정지 3개월, 3차 자격정지 6개월, 4차 면허취소로 조정하며, ③ 제약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하여 온 의약품대중광고 사전심의제를 추후에 보사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과대광고로 인한 약품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제약사가 사전심의 없이 대중광고를 하다가 2회 적발되면 품목제조정지 1개월 또는 광고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내용의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함(보사부).

: 동아 93.1.30., 21면; 국민 93.1.30., 18면; 조선 93.1.31., 18면; 서울 93.1.31., 14면

○ 개정약사법시행규칙 관련 입법의견(93.3.5)

- 이번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한약지식이 빈약한 약사들의 한약조제 및 판매가 양성화되어 국민건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삭제된 약국의 한약장설치금지조항 원상회복 및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 및 판매 엄중단속 등을 요구(한의협).
- 약사의 한약조제·판매양성화는 약사법상 적법하고 또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도 있었기 때문에 법률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시행규칙 조항을 삭제한 것임(보사부).

: 조선 93.3.4., 31면; 세계 93.3.9., 23면; 동아 93.3.9.23면; 국민

93.3.9.,18면: 한겨레 93.3.10.,15면: 국민 93.3.10.,18면: 경향
 93.3.12.,22면: 동아 93.3.12.,22면: 국민 93.3.12.,19면: 국민
 93.3.12.,19면: 세계 93.3.13.,21면: 서울 93.3.13.,23면

○ 인공수정관련 입법의견

- 인공수정은 불임부부들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만 의료계의 신뢰회복과 윤리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도 혈액 및 성병검사의무화 등을 규정한 관련법제정이 시급함(송찬호, 연세대산부인과 교수).
 - 인간의 생명의 근원인 정자와 난자의 매매행위와 무분별한 인공수정 기술을 규제하는 내용의 입법을 서둘러야 하며, 우선 인공수정기술기 관동의 허가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사부에 관련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함(권오태, 법무연수원 검사).
 - 의료기관에서 자체제정한 윤리강령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권고사항일 뿐 실효성이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인공수정기술을 규제하는 입법을 통해 정자매매행위, 감염된 정자에 의한 기형아 출산 등의 부작용을 막아야 함(김주수, 연세대법대 교수).
 - 인공수정기술이 대학부속병원 뿐만 아니라 개인의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므로 대한불임학회안에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인공수정을 합리적으로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대한불임학회).
 - 현행 의료법 및 동시행령상 인공수정과 관련한 명문규정은 없지만 의료기관과 의사의 비윤리적인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있으므로, 앞으로 대한산부인과협회의 「인공수정에 관한 윤리강령」이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나 현재로서는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은 없음(보사부 관계자).
 -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1986년에 「체외수정윤리강령」을 자체 제정하고 법률적 부부사이에서만 시술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나, 의학적 방법이 개발되고 시술비를 부담할 능력도 생겨나고 남이 낳은 아기를 입양하는 것보다는 법률적 부담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의학에 의존하여 불임의 고통을 치유받으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므로 불임시술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세밀한 규정을 법률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동아 사설).
- : 한겨레 93.1.21.,15면; 동아 93.1.21.,3·22면; 조선 93.1.22.,18면;
 서울 93.1.22.,22면; 서울 93.1.27.,18면

○ 의료법 개정의견

- ① 한방병원에서 한의대 졸업예정자를 한방수련의로 채용하는 등의 한방전문의제도를 도입해 내과, 부인과, 소아과, 안·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침구과 등 6~10개 전문과로 세분함.
- ② 지금까지 전국 19개 한방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배출된 「무자격」전문의와 수련중인 자 등 8백53명에 대해서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함. 또한 한시적인 조치로 한방병원에서 수련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중 6년이상 한의원을 열어 운영하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3백시간이상 받은 자 또는 병원급이상 의료기관에서 3년이상 실질적으로 전문분야에 종사한 자에 대해 한방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키로 함(보사부).
- 1995년초부터 양·한방협진체제를 도입해 한방병원에 진단방사선과, 양방병원에 침구과를 각각 설치토록 하고 일정기간 연수를 받은 양·한방의사에게 「인정의」 자격을 주는 방안도 확정할 계획(의료관계자).

: 중앙 93.3.3., 23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3호(73~74면) 참조

○ 자원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의견

- 폐기물 유발상품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플라스틱제품 등의 생산·수입업자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키로 하고, 현재 개당 20전인 종이팩의 폐기물예치금이 2원으로 올리는 등 예치금요율을 최고 10배까지 인상키로 함(환경처).

: 중앙 93.3.7., 2면

○ 적출물등처리규칙 개정안관련 입법의견

- ① 의약품제조업체가 병·의원으로부터 기증형식으로 공급받아왔던 태반에 대한 공급권을 적출물처리업자에게도 인정하여 태반을 수거하여 태반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약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며, ② 적출물의 범위에 거즈와 혈액백을 추가하고, 일회용주사기와 수액세트도 매물처리하도록 규정하며, 인체조직물을 제외한 모든 적출물은 매물처리하도록 하고, ③ 적출물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하여 적출물은 배출단계부터 일반쓰레기와 분리관리하도록 하고, 적출물처리업자와 의료기관은 적출물종류별로 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되 그

실적을 정기적으로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④ 적출물처리업자 지정요건을 강화하여 지정신청때에는 적출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별로 적출물처리전담요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적출물등처리규칙 개정안』을 마련함(보사부).

- 산모의 태반을 이용하여 상품을 제조함으로써 이윤을 취한다는 것 자체가 비인도적이지만 병원측의 기증형식은 용인될 수 있다하더라도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장기매매와 다름없는 비윤리적 행위임(차경섭, 차병원이사장).

: 국민 92.1.25.,19면; 서울 93.1.26.,22면; 조선 93.1.26.,30면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개정의견

- ① 기존의 예치금대상 17개 품목중 유리병, 종이팩, 알루미늄캔 등 재활용이 가능한 9개 품목은 종전대로 예치금을 부과하고, 화장품용기 등 재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한 8개 품목은 폐기물회수처리를 면제하는 대신 부담금을 부과.
- ② 내년부터 농약병·에어컨 등 7개품목은 예치금부과대상에, 라면용기·부동액·기저귀 등 6개품목은 부담금부과대상에 각각 추가.
- ③ 현행 예치금요율이 실제 폐기물회수처리비용보다 훨씬 낮아 채산성이 없는데다 기업들이 폐기물회수를 기피하고 있는 점을 감안, 예치금요율도 최고 10배까지 대폭 인상할 방침.
- ④ 전체 쓰레기의 28.6%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대형음식점, 산업체, 호텔, 학교, 도축장, 수산시장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시설들은 의무적으로 음식물퇴비화 등 중간처리를 하도록 할 방침(환경처).

: 세계 93.2.20.,22면; 한겨레 93.3.13.,14면; 서울 93.3.13.,19면; 중앙 93.3.12.,21면

○ 法 院 · 法 務

○ 가족법 개정의견

- 전통윤리의 보존을 위해 호주제 및 동성동본금혼 폐지의 반대를 주장함(성균관 유도회 서울시지부회).

: 중앙 93.2.26.,19면

○ 경찰수사권독립관련 입법의견

- 경찰이 반드시 검찰지휘를 받아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효율성도 없으며, 경찰의 인적수준이 생활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독자적으로 진행할 능력을 갖춘 만큼 새정부출범에 맞추어 이러한 비능률의 관행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백남치, 민자당 제3정책조정실장).

: 국민 93.1.28., 19면

○ 국가보안법폐지관련 입법의견

- 『국가보안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합법적인 남용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인권과 정치탄압의 도구로 악용되어 왔으므로 폐지되어야 하고, ① 국가보안법 중 불고지·금품수수·잠입탈출·통신회합·찬양고무·편의제공 등에 관한 처벌조항은 삭제하고 구체적인 안보침해행위만을 처벌하도록 하고, ② 국가보안법중 반국가단체조항과 남북교류를 안보범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불필요한 수사편의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질서보호법』을 제정하여야 함(민주당).
- 국가보안법은 독재와 분단을 연장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는 도구로 악용되어 왔으므로, 동서화해와 평화기류 속에 「남북합의서」가 발효되어 남북이 상호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만큼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함(종교·법조·여성·언론·출판·정계인사 1천여명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천인 선언」)

: 서울 93.1.31., 2면; 한겨레 93.1.31., 1면; 동아 93.2.4., 4면; 중앙 93.2.20., 2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1호(57~58면) 참조

○ 국가안전기획부법 개정의견

- ① 안기부의 수사권을 폐지하되 안기부직원이 직무수행중 저지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인정함.
- ② 해외산업기술정보수집을 직무에 포함시킴.
- ③ 정보 및 보안업무의 조정·감독권은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정보협의회를 신설해 이관함.
- ④ 안기부의 지부는 특히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특별시, 직할시, 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함

- ⑤ 모든 안기부원의 정치활동관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중벌에 처함
- ⑥ 안기부는 대통령의 승인없이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내사할 수 없음
- ⑦ 안기부의 예산은 국회정보위원회에서 실질심사하되 세출예산내역을 비공개로 하고, 비밀활동비는 예비비로 해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함(민주당).

: 동아 93.2.16.,9면; 국민 93.2.16.,2면; 서울 93.1.31.,2면; 한겨레 93.1.31.,1면; 동아 93.2.4.,4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4호(44~45면) 참조

○ 도청방지관련 입법의견

- ① 전자장치나 기계를 이용하여 도청하거나 통신내용을 폭로 또는 공개할 경우 징역 2년 이상의 형에 처하며, ② 사전허가 없이 도청설비를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할 경우에도 같은 형으로 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도청방지법』을 제정하기로 함(민주당).
- 불필요한 도청을 엄격히 금지하여 도청행위는 처벌하되, 간첩사건과 유괴사건 등 수사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합법적인 감청은 허용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의 제정이 필요함(민주당).

: 국민 92.12.23.,1면; 서울 92.12.24.,1면; 서울 93.1.31.,2면; 한겨레 93.1.31.,1면; 동아 93.2.4.,4면

○ 변호사법 개정안

- 변호사에 대한 업무정지명령요건을 공소제기로 인해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거나 공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하고 법조계 부조리근절을 위해 변호사에게 사건알선 후 급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의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함(국무회의).

: 서울 93.1.15.,2면

※ 「국내입법의견조사」 제2호(58면) 참조

○ 사법보좌관제도신설관련 입법의견

- 사법연수원 수료자 및 법무관제대자 등 변호사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사법보좌관을 선발하여, 5년동안 법관업무를 보조한 뒤, 평가를 거쳐 정식판사로 임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보좌관제도』를

신설하도록 하고 관련법규개정이 이루어지는 대로 시행하기로 함(대법원, 「법관인사제도 개선안」).

: 국민 93.1.8., 18면; 국민 93.2.2., 14면

○ 전과기록말소에 관한법 제정안

- ① 현재 3년이 지나야 말소되는 벌금형과 1년이 지나야 말소되는 구류 및 과료형의 전과기록을 벌금납부나 집행 완료 즉시 말소토록 함.
- 일률적으로 10년으로 규정돼 있는 형실효기간을 조정하여,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의 전과기록은 형집행 종료 또는 면제후 5년이 지나면 없애도록 함. 다만,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한해서는 누범조회 및 수사상 필요를 고려하여, 전과기록을 보관토록 하되 수사목적외에는 이용을 금지토록 할 방침(정부).

: 한겨레 93.3.4., 14면; 한겨레 93.3.6., 1면; 한국 93.3.6., 23면; 조선 93.3.7., 18면; 세계 93.3.8., 22면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개정의견

- 범죄단체 가입죄의 공소시효가 가입시점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가입이후 검거시점까지 조직원으로 활동했다라도 가입후 7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의 개정을 건의.

이 법률 제4조(구성요건)중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를 「구성하거나 수괴 또는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 「가입한 자」를 「가입하거나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 개정하여야 함(검찰청).

: 한국 93.2.17., 23면

○ 행정법원 설치관련 입법의견

- ① 행정소송이 격증함에 따라 현재 고등법원 특별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행정소송사건을 전담하게 될 지방법원급의 행정법원을 신설하여 행정·조세 등의 소송사건을 하급법원인 행정법원이 제1심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② 행정법원법관들의 직급은 지방법원 수준으로 하고, 재판은 단독판사가 아닌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체가 되도록 하여 심리의 신중과 인권보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행정법원의 신설이 필요함(대법원, 「행정사건심급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보고서」).

: 한겨레 93.1.7., 12면; 동아 93.1.6., 23면; 국민 93.1.6., 1면

○ 행정법 개정의견

- 1950년 3월 2일에 제정된 행정법 및 그 시행령과 하위법규인 수행자 분류처우규칙, 재소자규율·징벌규칙 등 하위법규가 일체의 강점기인 1992년 칙령 제243호로 제정된 조선감옥법 체계를 거의 대부분 답습한 것이어서 비록 4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되기는 하였지만 권위적이고 전근대적 요소가 많고, 특히 행정법 62조는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의 처우에 대해 대부분 기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처우에 차이를 두지 않는 것은 단순히 행정편의를 위한 것으로 헌법에 규정된 미결수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남(재야 법조인).
 - 재소자 처우개선의 방안의 하나로 편지나 소송관련서류작성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집필관련규정을 크게 완화하여 필기구를 가질 수 있게 하고 집필권을 전면보장하여야 함(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등 인권단체).
- : 한겨레 93.1.14., 15면

II. 최신법령 목록

(1992. 12. 16 ~ 1993. 3. 15)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법 률 4540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1993. 2. 24
4541	정부조직법중개정법률	1993. 3. 6
4542	국회법중개정법률	1993. 3. 6
4543	검찰청법중개정법률	1993. 3. 10
4544	변호사법중개정법률	1993. 3. 10
4545	도로법중개정법률	1993. 3. 10
4546	해운업법중개정법률	1993. 3. 10
4547	고엽제후유증환자진료등에관한법률	1993. 3. 10
조 약 1112	대한민국정부와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 간의과학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	1992. 12. 16
1113	대한민국정부와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 간의무역협정	1992. 12. 16
1114	대한민국정부와우즈베키스탄공화국정부 간의투자의증진및상호보호에관한협정	1992. 12. 16
1104	대한미국정부와미합중국정부간의전시지 원에관한일괄협정	1992. 12. 29
1121	대한민국정부와브라질연방공화국정부간 의과학및기술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협정	1992. 12. 29
1122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제14 조제7항유보철회	1993. 1. 21
1123	대한민국정부와중화인민공화국정부간의 건설분야에서의협력에관한양해각서	1993. 2. 2
1161	대한민국정부와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정 부간의경제및기술협력에관한협정	1993. 2. 16
1162	대한민국정부와파키스탄회교공화국정부 간의대파키스탄공화국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공여에관한교환각서	1993. 2. 16
1163	대한민국정부와폴란드정부간의대폴란드 공화국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관한 교환각서	1993. 3. 5
1164	대한민국정부와미얀마연방대정부간의대 미얀마연방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공여에 관한교환각서	1993. 3. 5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조 약 1165	유류오염손해보상을위한국제기금의설치에 관한국제협약	1993. 3. 6
1166	난민의자위에관한협약	1993. 3. 4
1167	유류오염손해에대한민사책임에관한1969 년국제협약의의정서	1993. 3. 6
1168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개정 의정서	1993. 3. 9
대 통 령 령 13782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1992.12.21
13783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중개정령	1992.12.21
13784	보훈기금법시행령중개정령	1992.12.21
13785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개정령	1992.12.24
13786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1992.12.26
13787	전당포영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2.12.26
13788	검사정원법시행령중개정령	1992.12.26
13789	건설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2.12.26
13790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2.12.26
13791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규정중개정령	1992.12.26
13792	외무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1992.12.28
13793	보험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2.12.28
13794	대통령직인수위원회설치령	1992.12.28
13795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중개정령	1992.12.31
1379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 법시행령	1992.12.31
13797	국세징수법시행령중개정령	1992.12.31
13798	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2.12.31
13799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 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중개정령	1992.12.31
13800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2.12.31
13801	상속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2.12.31
13802	소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2.12.31
13803	법인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2.12.31
13804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개정령	1992.12.31
13805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2.12.31
13806	관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2.12.31
13807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 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2.12.31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대 통 령 령 13808	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등에의한국제 기구에대한관세의양허에관한규정중개정 령	1992. 12. 31
13809	균표창규정중개정령	1992. 12. 31
13810	개방대학설치운영규정중개정령	1992. 12. 31
13811	청소년기본법시행령	1992. 12. 31
38128	수산물검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92. 12. 31
13813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	1992. 12. 31
13814	의료법시행령중개정령	1992. 12. 31
13815	의료보호법시행령중개정령	1992. 12. 31
13816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1992. 12. 31
13817	공무원보수규정중개정령	1992. 12. 31
13818	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1992. 12. 31
13819	관용차량관리규정중개정령	1992. 12. 31
13820	소방기관설치및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2. 12. 31
13821	공업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2. 12. 31
13822	법제처직제중개정령	1992. 12. 31
13823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개정 령	1992. 12. 31
13824	국가유공자에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 정령	1992. 12. 31
13825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개정령	1993. 1. 15
13826	국무총리비서실직제중개정령	1993. 1. 30
13827	외무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3. 1. 30
13828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3. 1. 30
13829	관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3. 1. 30
13830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3. 1. 30
13831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	1993. 1. 30
13832	농림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3. 1. 30
13833	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2. 1. 30
13834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시 행령중개정령	1993. 2. 1
13835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중개정령	1993. 2. 5
13836	수산청과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3. 2. 10
13837	교원자격검정령중개정령	1992. 2. 16
13838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2. 2. 19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대 통 령 령 13839	농수산조사통계심의위원회규정중개정령	1992. 2. 19
13840	총무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2. 2. 19
13841	국가보훈처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	1992. 2. 19
1384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2. 2. 20
13843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2. 2. 20
1384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2. 2. 20
13845	외자도입법시행령중개정령	1992. 2. 20
13846	관세법제10조의규정에의한정제인산에대한덤핑방지관세의부과에관한규정	1992. 2. 20
13847	관세법제16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2. 2. 20
13848	군납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1992. 2. 20
13849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	1992. 2. 20
13850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	1992. 2. 20
1385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2. 2. 20
13852	채신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령중개정령	1992. 2. 20
13853	예산회계법시행령중개정령	1992. 2. 22
13854	군인사법시행령중개정령	1992. 2. 23
13855	사립학교법시행령중개정령	1992. 2. 23
13856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2. 2. 24
13857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중개정령	1992. 2. 24
13858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	1992. 2. 24
13859	국립학교설치령중개정령	1992. 2. 24
13860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중개정령	1992. 2. 24
13861	사립학교교원연금법시행령중개정령	1992. 2. 24
13862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중개정령	1992. 2. 24
13863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	1992. 2. 24
13864	식품위생법시행령중개정령	1992. 2. 24
13865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	1992. 2. 24
13866	국립의각급학교에두는공무원의정원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2. 2. 24
13867	지방교육행정기관직제중개정령	1992. 2. 24
13868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중개정령	1992. 2. 24
13869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2. 3. 6
13870	상공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1992. 3. 6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총 리 령	414 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	1992. 12. 24
	415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 12. 31
	416 공문서분류및보존에관한규칙	1992. 12. 31
	417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1. 8
외 무 부 령	166 임시외교또는영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폐지령	1993. 1. 30
	167 재외공무원수당지급규칙중개정령	1993. 2. 20
내 무 부 령	575 소방공무원복제규칙중개정령	1992. 12. 30
	576 지방양여금법시행규칙개정령	1992. 12. 30
	577 도로교통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 12. 31
	578 내무부장관이시행하는5급이상지방공무원임용시험시행규칙중개정령	1992. 12. 31
	579 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	1992. 12. 31
	580 참고인등비용지급규칙중개정령	1993. 1. 7
	581 자연공원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1. 5
	582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2. 3
	583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중개정령	1993. 2. 27
	584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3. 3
	585 지방자치복권발행승인기준등에관한규칙	1993. 3. 3
재 무 부 령	1897 신용보증기금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 12. 17
	189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	1992. 12. 17
	1899 국세징수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 12. 31
	1900 국세기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 12. 31
	1901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1992. 12. 31
	1902 재무관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1992. 12. 31
	1903 지출관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1992. 12. 31
	1904 출납공무원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1992. 12. 31
	1905 도급경비사무처리규칙중개정령	1992. 12. 31
	1906 관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2. 5
	1907 세관관서사무분장규칙개정령	1993. 2. 10
	1908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2. 26
	1909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2. 26
	1910 상속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2. 26
	1911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2. 27
	1914 외자도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2. 27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재 무 부 령 1916	지방국세청및세무서사무분장규칙중개정령	1993. 2. 27
1917	국세청과그소속기관직제제50조제1항단서의규정에의한세무서하부조직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3. 2. 27
1912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3. 3
1913	소득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3. 3
1915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중개정령	1993. 3. 3
국 방 부 령 435	군인의특수근무수당에관한규정중개정령	1993. 2. 8
교 육 부 령 625	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평정규칙중개정령	1992. 12. 31
626	교원연수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1. 26
627	명예교수규칙중개정령	1993. 1. 26
628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2. 6
630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3. 3. 15
체 육 청 소 년 부 령 21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1993. 2. 1
농 립 수 산 부 령 1110	해외가축전염병및원예환경연구에관한한시조직설치규칙	1993. 1. 11
1111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개정령	1993. 2. 1
1112	식물방역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 2. 8
1113	수입식물검역규칙중개정령	1992. 2. 8
1115	국립종축장종축배부규칙개정령	1993. 3. 15
상 공 자 원 부 령 1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및상표법에의한특허료·등록료와수수료의징수규칙중개정령	1993. 3. 11
건 설 부 령 519	수도법시행규칙개정령	1992. 12. 15
520	공업용수공급규칙중개정령	1992. 12. 15
521	수도시설의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1992. 12. 15
522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2. 12. 16
52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2. 12. 22
524	도시계획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 12. 23
525	건설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2. 4
보 건 사 회 부 령 897	음용수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2. 12. 15
898	수도시설의위생관리등에관한규칙	1992. 12. 15
899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1. 18
900	검역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2. 20
901	의료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3. 3
902	약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3. 5
노 동 부 령 8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1. 18

공 포 번 호	건 명	공포연월일
교 통 부 령	991 선박및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 칙중개정령	1992. 12. 22
	992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 12. 31
	994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1992. 12. 31
	993 한국철도공사설립위원회규칙	1993. 1. 4
	996 개항질서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1. 30
	997 선박검사원자격등에관한규칙중개정령	1993. 1. 30
	995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개정령	1993. 2. 1
	998 도선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2. 2
	999 항공법시행규칙개정령	1993. 2. 13
	999 항공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3. 2. 13
	1000 철도청직원복제규칙중개정령	1993. 2. 16
1001 공항시설관리규칙중개정령	1993. 3. 4	
체 신 부 령	825 우편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92. 12. 23
	853 체신예금·보험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 정령	1993. 1. 26
	855 텔레비전공동안테나시설등의설치기준에 관한규칙	1993. 3. 8

국내입법의견조사(선물거래법 제정에 관한 입법의견조사) 제6호

1993年 3月 20日 印刷

1993年 3月 25日 發行

發行人 李世薰
發行處 韓國法制研究院
印刷處 韓國컴퓨터產業(주)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03
전화 : 722 - 2901~3, 722 - 0163~5
등록번호 : 1981. 8. 11 제1-190호

本院의 承認없이 轉載 또는 譯載를 禁함.

값 2,000원

